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101-01

농산물 유통 및 수급체계 개편방안 연구

2015. 12.

농림축산식품자료실



0017615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농산물 유통 및 공급체계 개편
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12.

한국법제연구원

원 장 이 원

<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자 : 김 지 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윤 계 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 중 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장 은 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전 주 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 철 호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목 차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	14
제 2 장 농산물 유통의 현황	17
제 1 절 서 설	17
제 2 절 농산물 유통 환경의 변화	18
제 3 절 도매시장 관련 현황 등	20
제 4 절 산지유통센터 현황 등	23
제 3 장 농산물 유통관련 법령체계	27
제 1 절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관련 법령체계	27
1. 농수산물 유통관련 법령체계 개관	27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30
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4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45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46
제 2 절 일본의 농산물 유통관련 법제도 분석	49
1. 농산물 유통 등 관련 법제 개관	49
2.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50
3. 「도매시장법」	57
제 4 장 현행 농안법의 법령체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77

제 1 절	현행 법령체계의 분석	77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경과	77
2.	현행 법률 체계 및 문제점	87
제 2 절	법령 체계 개편방안	89
1.	제1안	89
2.	제2안	133
3.	제3안	134
제 5 장	농산물 유통관련 기타 제도개선 방안	139
제 1 절	도매시장 구분관리의 실효성 제고	139
1.	도매시장 구분의 실효성 제고	139
2.	중앙과 지방 도매시장의 차별화	142
제 2 절	지정·허가제도의 보완	143
1.	도매시장법인 지정·중도매인 허가·시장도매인 지정제도의 보완	143
2.	허가·갱신 관련 입법례	145
제 3 절	지정·허가 요건의 보완	148
제 4 절	행정처분 관련 제도 보완	151
1.	행정처분 차수기준 강화(1년→2년)	151
2.	행정처분 사유 신설	152
3.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등	152
제 5 절	기 타	152
1.	청과시장의 저온창고 관련	152
2.	주산지 지정 관련	153
제 6 장	결 론	155

참 고 자 료	157
별첨 : 일본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159
별첨 : 일본 도매시장법	17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농산물 유통이란 농산물의 생산자인 농민과 최종소비자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주체(매개자), 경로(도매시장, 직거래 등)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농산물을 수집·운송·보관·거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는 생산과 소비 사이의 간격을 중간 유통주체들의 유통기능을 통해 해결하면서, 생산자(농민)와 소비자의 이익과 효용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은 과거 생산자(농민)와 소비자의 직거래 단계에서 지역의 재래시장 등을 통한 직거래 및 1단계 유통을 시작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80~'90년대를 걸쳐 소비지 도매시장의 대량유통분산이 주된 유통경로로 자리잡았으며, 이후 농산물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도매시장경로와 함께 대형유통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온라인 거래를 비롯한 각종 직접 마케팅이 확산되는 복합적인 유통경로로 변모하고 있다.

종래 이러한 농산물과 관련한 법령은 유통에 관한 부분과 가격안정에 관한 부분을 나누어서 규율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었다. 즉, 1968년에 제정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통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농산물 가격의 안정 및 농가경제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1973년에 제정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2원적 규율체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소비가 늘어나고 고급화의 요구가 커지면서 시장거래가격이 높아지는 추세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농산물의 가격상승이

일반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짐에 따라 정부는 이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적·법적 대응을 위하여 종래 시행되어 오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법」과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제정 이래 1차례의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수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오면서 전체적인 법률의 체계는 큰 틀을 유지한 채, 일부 관련내용들이 법률에 추가되면서 유통·수급·도매시장·기금 등에 관한 내용들이 동일 법률에 혼재되어 체계가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과 관련한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유형화하고 정리하여 법령 체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유통 상황의 변화나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에 있어 균형잡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적 기초를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분석 및 유형화를 통하여 농산물 수급관리, 도매시장 운영·관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제도 등에 대한 제도체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법제적 검토가 요청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법률 체계의 정합성, 내용상 연관성을 고려한 조문배치, 수급 및 유통의 체계적 제도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현대사회에서는 농산물 등의 유통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빈번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급예측의 불확실성까지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고 유통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책의 전제가 되는 법제도의 명확성 확보 및 합리성 추구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농산물 유통관련 법제의 전반적 검토를 통해 유통환경 및 관련 정책의 변화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

다. 즉, 1990년대 이후 정부는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산지유통조직의 육성, 도매시장 및 종합유통센터의 건립, 도매시장 운영개선, 물류합리화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을 개선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효율적인 유통경로가 새롭게 대두되고 생산자조직화가 진전되는 등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농산물 유통의 비효율성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농산물 유통개선은 구조변화를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정부가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효율화를 위해 종래 직거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도매시장 위주의 다단계 유통이 주력 유통경로로서 기능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에 대한 제도개선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간의 정책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유통단계 축소라는 외형적 당위성보다는 현실 분석에 입각하여 유통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범적 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에 관한 법제도적 규범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산물의 유통 및 공급체계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별적인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 역시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법령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산물 유통 및 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법령체계 개선방안의 도출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법령체계의 정합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장·절의 배치 및 조문의 순서에 대하여 고찰하여, 논리적체계에 맞는 법령체계를 다시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거래단계, 거래주체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한 부분, 농수산물 유통 관련 정책적 요소에 관한 부분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포함한 가격안정 등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상호관련성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특히 도매시장에 관한 규율내용을 개설, 관리·운영, 매매·거래, 기타 농수산물 유통기구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현행법령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개편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편 이에 관한 논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법령체계와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는 일본의 농산물 유통 관련 법령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우리법제의 개편방향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농산물 유통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 적용 단계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도매시장 분류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지정·허가 등과 관련된 제도보완 및 기타 행정처분 등 법령의

집행·적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한 법령개정안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전면적인 체계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개별적·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개정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 2 장 농산물 유통의 현황

제 1 절 서 설

농산물 유통이란,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다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농산물 유통은 “다양한 유통 기관과 활동이 관여되기 때문에 시스템적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분야이다. 농산물 유통기관으로는 직접 유통기관으로 생산자 및 중간상(도매상, 소매상), 소비자가 있고, 유통조성기관으로 정부기관, 수송업자, 보관업자, 하역업자, 금융회사, 마케팅관련회사(광고, 시장조사 등) 등이 있다.

이러한 농산물의 유통경로와 관련하여, 기존에 농산물은 도매시장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유통경로로 유통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대형 유통업체 및 종합유통센터의 산지직거래, 전자상거래 등의 확대로 새로운 유통경로가 대두되고 있다. 한편 대형유통업체, 종합유통센터, 전자상거래, 산지유통센터 등을 통한 유통은 전통적인 도매시장 유통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를 신유통시스템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신유통시스템의 확산 결과 현대의 농산물 유통경로가 다원화되고 있는 이에 따라 도매시장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의 경로뿐 아니라, 도매상 경로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 종합유통센터, 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시장 외 거래도 중요한 유통경로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이렇듯 다원화된 유통경로로 도매시장이 위축되는 측면은 있으나, 대량으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수의 중개업자, 다수의 구매업자가 존재하는 도매시장이라는 점에서 도매

시장은 여전히 가격형성, 수급조절, 집하된 농수산물의 소매시장 분산, 유통비용 절감, 거래상 안전, 국가 물가정책 수행 및 유통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농산물 유통 환경의 변화

2000년대 이후 소비지 유통업체의 빠른 확산으로 인하여 농산물 유통환경이 변화하면서 광역적 개념의 직거래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을 통한 생산자 단체의 출하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 생산자의 개별출하가 많을 때에는 생산자가 직접 도매시장에 출하하거나 직거래 등을 통하여 판매활동을 해왔으나, 소비지 유통업체가 규모화되면서 산지유통의 출하체계가 생산자 개별출하에서 농협의 산지유통시설(APC)을 경유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최근 신선청과물 유통경로별 출하 비중에 따르면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이 운영하는 산지유통조직의 취급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지출하단계의 조직화·규모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¹⁾

소비지 유통업체도 대량수요처, 식자재유통업체, 대형유통업체 등으로 규모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있어 도매 및 소매 단계의 취급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지 유통업체의 규모화에 따라 농협과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산지유통조직의 조직화·규모화가 촉진되면서 농산물 직거래 방식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²⁾

첫째, 생산자단체인 농협의 계통출하 활성화, 농협 도매조직, 하나로마트 확충 등으로 직거래 규모 증가 및 규모화 진전이 그것이다. 직거래의 일환인 농협 계통출하 경로(생산자→APC→농협도매조직 또는 물류센터, 하나로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생산자 상생의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정책연구보고, 2013. 8., 105면.

2) 앞과 동일.

마트, 인터넷 및 홈쇼핑 등→소비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간 직거래의 확산이 예상되고 있다. 과거 직거래 경로는 한 살림, 아이쿱, 초록 마을 등과 같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주도하였다. 생협은 주로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면서 생산자 조직화를 계약재배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지 직매장, 통신판매, 택배, 꾸러미 등을 활용하여 판매하여 왔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 등의 소비지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골목상권에 위치한 슈퍼마켓이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화(이하 코사마트)를 중심으로 조직화 체계를 구축하였다. 코사마트 회원은 정부 및 지자체 지원과 지역별·상권별 조직화 체계를 바탕으로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공동구매를 통하여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

셋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직거래가 등장하고 있다. 과거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는 생산자가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택배를 활용하여 판매하여 왔다. 생산자가 생산활동을 병행하면서 홈페이지 관리, 반품 및 대금 정산 등의 활동까지 병행하고 판매를 촉진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었으나 헬로네이처³⁾와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업체가 등장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직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업체의 등장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직거래 관련 정부지원사업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직거래 등의 대안 유통 경로를 확산시킬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정부는 직거래의 다양한 유형(로

3) 헬로네이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직거래를 실시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만 및 민원을 파악하여 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 <http://www.hellonature.net/shop/main/index.php>

컬푸드 직매장, 상설 및 비상설 직거래 장터, 꾸러미 사업, 온라인 직거래 물 등)을 발굴 육성하여 재정과 금융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어, 직거래 경로의 확산이 예상된다. 물론, 농산물 직거래 개념은 농산물 유통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직거래 본연의 목적인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생산자 수취가격 증대, 소비자 구매가격 인하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농산물 유통환경이 소비자 유통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산지유통조직의 소비자 대응이 규모화·조직화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유통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즉, 농산물 직거래도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규모화를 지향한 다양한 거래방식이 도입되면서 광의적 개념의 직거래가 확산되고 있지만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3~4단계의 유통단계가 존재한다.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간 광의적 개념의 직거래도 산지유통시설, 물류센터, 매장 등의 유통단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로는 직거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한다.

제 3 절 도매시장 관련 현황 등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도매시장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법상 분류에 따를 경우, 중앙도매시장이 9군데(서울가락, 부산엄궁, 부산국제수산, 대구북부, 인천삼산, 광주각화, 대전오정, 대전노은, 울산, 노량진수산), 지방도매시장이 34군데, 민영도매시장이 3군데로 총 48곳의 도매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은 총 120, 시장도매인 수는 총 55, 중도매인수는 총 8116, 매매참가인수는 641에 달하고 있다.

<도매시장 종류별 현황>4)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부자유채별 분류			농안법상 분류		
		공영	일반법정	민영	중앙주)	지방	민영
시 장 수	48	33	12	3	11	34	3
도매법인수	120	106	11	3	42	75	3
시장도매인수	55	55	-	-	3	52	-
도매법인임직원수	2,724	2,166	398	160	1,317	1,247	160
중 도 매 인	8,116	7,580	457	79	4,573	3,464	79
매매참가인	641	557	71	13	388	240	13

한편, 도매시장의 매매방법은 경매 거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데, 중도매인이 직접 생산지에서 수집 및 거래가 가능한 상장예외품목 거래제도가 존재한다.

상장예외 거래제도는 경매 거래의 보완장치로서 특정 품목에 대하여 한시적이고 일시적으로 도입되는 거래 형태이다. 상장예외품목의 지정은 해당 품목의 거래량이 적거나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중도매인의 해당 농수산물 매입에 어려움 존재 등을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해야 하며, 거래 품목과 중도매인에 대하여 1년 단위로 허가·관리되고 있다. 5)

2014년 현재 상장예외품목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가락시장에서는 채소(88), 과일(27), 수산(60) 품목이 상장예외품목으로 되어 있고, 부산엄궁시장의 경우 채소(16), 부산 반여의 경우 채소(18), 부산국제시장은 수산품목이 상장예외품목이며, 대구북부는 채소(83), 울산은 수산(28), 수원은 채소(55), 안산은 수산(125), 구리는 농산부류(102), 수산(48)개의 품목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6)

4)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2015. 9, 3면.

5) 김동성/김기태/김종우/박성기, 농수산물 거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부정거래 탐지방안,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52면.

상장예외품목 거래제도는 취급하는 중도매인의 수 및 거래물량 증가로 인한 효율적인 관리의 어려움과 수의매매에 의한 가격 결정으로 유통정보의 생산과 이용의 어려움 등 투명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상장예외품목이 아닌 품목들의 거래 발생, 생산 농가들의 시장 대응력 약화, 거래실적 누락과 세금탈루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상장예외품목 거래의 대표적인 부정거래 의심유형으로는 시장평균 거래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판매가 차이, 중도매인과 생산자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의 송품장 허위등록,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중도매인이 취급하기 어려운 품목의 거래 발생 또는 특정 품목 거래 물량의 급격한 증감 발생 등이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황관련 자료를 살펴보면,⁷⁾ 2005년 이후에 개장한 도매시장은, 공영도매시장으로는 부산시 국제 수산물 도매시장('08. 8. 18)이 있고, 일반법정 도매시장 중에는 2005년 이후 개장한 도매시장이 없으며, 민영도매시장은 논산시 민영 농산물 도매시장('07. 7. 1)이 유일하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면,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한 신유통시스템은 증가하는데 반하여 전통적 유통경로인 도매시장의 증가추세는 미미한 것을 알 수 있고, 최근 5년 내에는 신규 개설된 도매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황을 살펴볼 때,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도매시장 제도 관련 사항을 정비하거나 도입할 경우, 도매시장 개설에 관한 사항보다는 기존 도매시장의 고도화 및 분류체계의 재정립, 도매시장 내 유통참가인의 관계 정립 및 기능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6)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2015. 9, 42-43면.

7)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2015. 9, 199-203면.

제 4 절 산지유통센터 현황 등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APC)는 농산물의 선별·포장·저장·출하·전처리 등 상품화 작업을 수행하는 복합시설을 일컫는 것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산지 유통조직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향상 등을 위하여 1992년부터 건립해 오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산지유통 효율화를 위한 시설지원은 선과정, 저온 저장고, 경매식 집하장 등 산지 유통 중 특정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이루어졌다. 집하, 선별, 포장, 저장을 통합한 복합시설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92년 ‘청과물 종합유통센터’이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PAC)’는 1999년부터 ‘농산물 포장센터’의 명칭을 개정하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APC에서는 수확 후 관리기술을 구사하여 원료상태의 농산물을 수확 후 신속하게 수집하여 판매를 위한 규격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제품공장이라는 점에서 ‘제2의 생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⁸⁾

산지유통센터는 설치 과정에서 다양한 시설과 센터를 기본으로 하여 실질적인 기능과 관리주체는 다양하다. 기존 집하장에 선별기와 저온저장고 시설을 확장한 경우가 있고, 가공공장, 공판장 등 타 목적의 산지시설에 부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이 아닌 정책사업을 통해 건립, 보완되거나 순전히 자부담으로 건립된 시설도 있다.⁹⁾ 산지유통센터는 크게 정부지원산지유통센터(정부지원 APC)와 지자체 및 민간투자산지유통시설(지역 APC)로 구별된다. 정부지원 APC는 정책사업별로 분류할 경우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을 하는 일반산지유통센터(일반 APC)와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을 하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거점 APC), 원예

8) 김성은, DEA를 이용한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성 분석,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9) 지역농업네트워크, 토마토 유통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1.

브랜드 육성사업을 하는 원예브랜드 유통센터(원예 APC)로 나누어진다. 지역APC는 지자체별 관련 정책사업을 수행하며 지역산지유통시설이라 불린다. 2015년 현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는 전국에 367개소가 있고 거점 시설은 다음과 같이 21개의 사업장이 있다.¹⁰⁾

순번	시도	시군	사업자명	소재지	취급품목
1	경기	안성	안성과수농협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148	배, 사과, 블루베리
2	경남	거창	농업회사법인(주)NH유통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	사과,마늘
3	경북	문경	대구경북능금농협(문경지점)	문경시 마성면 외어 7길 52	사과
4	경북	영주	대구경북능금농협(영주지점)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 1693	사과
5	경북	의성	새의성농협	의성읍 원당리 246	사과
6	전남	나주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나주시 영산포로 22(이창동)	배
7	전남	순천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순천시 승주읍 중대길 15	매실, 배, 참다래
8	전북	장수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	계남면 침곡로 11-26	사과
9	제주	남원	제주감귤농협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555	감귤
10	제주	남원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2리	감귤
11	충북	충주	충북원예농협	충주시 금가면 금가중앙2길 1-22	복숭아, 사과, 배
12	제주	애월	제주감귤농협	애월읍 애월리 354-3	감귤
13	제주	위미	제주감귤농협	남원읍 태위로123-3	감귤
14	제주	조천	제주감귤농협	마성면 외어리 716	감귤
15	제주	중문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	서귀포시 색달동	감귤
16	제주	토평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	토평동 2157	감귤
17	제주	회수	제주감귤농협	서귀포시 회수동 733	감귤
18	충남	아산	아산원예농협	염치읍 충무로 358번길 11	배, 사과
19	충남	예산	예산능금농협	신암면 용궁리 138-4외 1필지(138-26)	사과, 배
20	충북	음성	햇사레조합공동사업법인	충북 음성군 음성읍 반기문로 27	복숭아
21	제주	하례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185-4	감귤

10) <http://www.at.or.kr/article/apko323220/view.action?articleId=21352>

과거에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단위조합과 영농조합법인이 대부분이며, 간이집하장은 단위조합 영농조합법인 영농회 작목반, 청과물종합처리장 및 청과물종합유통시설은 단위조합이 전부 운영하고, 저온창고는 민간업체가 주로 운영하였으며, 단위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도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다양한 산지유통주체가 등장하고 농산물 유통채널(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 등)의 규모화 및 대형화, 정부의 산지유통정책 개편으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지유통주체의 규모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산지유통주체의 다양화는 크게 연합회적 조직과 단독경영체적 유형으로 진전되고 있다. 또한 소비시장의 변화와 정부정책에 힘입어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물 산지유통주체도 기존 농협, 영농조합법인 이외에도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대규모 산지형 벤더, 규모화된 유통형 영농법인 등이 새로운 산지유통의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제 3 장 농산물 유통관련 법령체계

제 1 절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관련 법령체계

1. 농수산물 유통관련 법령체계 개관

농산물과 수산물의 유통이 세부적으로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으나, 기본적으로 유통 경로 및 체계를 같이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농수산물의 유통 관련 법령을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농산물과 수산물의 규율 정책은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고 있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통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주기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율환경 변화에 따른 분석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현재,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함)이다. 동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¹¹⁾ 동법을 통하여 농산물과 수산물 유통이 함께 규율되고 있기는 하지만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6년 3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른 규율범위 및 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농수산물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도 있다. 동법 역시, 2015년 6월 22일 제정, 2015년 12월 23일 시행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고, 이에 따라 수산업과 농업이 별도의 규율체계를 갖추게 된다. 농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2015년 6월 22일에 제정되어 2016년 6월 23

11) 농수산물유통법 제1조(목적)

일에 시행예정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있다.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별도의 규율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¹²⁾ 동법에서는 농수산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용기·설비·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물류표준화”,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칭·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인 “지리적 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부관리양곡” 및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하는 “공공비축양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곡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이므로 농수산물 유통법의 적용을 받지만, 특별히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정부관리양곡 및 공공비축양곡을 규정하여 별도 규율하도록 하

1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조(목적)

고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집하장 설치사업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의 하나로 규정하여 동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토지 수용·사용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하여 사업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³⁾

법률 외에 농수산물 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으로는 「감귤 유통조절명령의 발령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34호),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구역 편입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71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5호),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지침」(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43호), 「농업 관측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호), 「밭식량작물 주산지 지정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45호),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4-68호), 「포전매매의 계약에 활용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계약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309호) 등이 있다.

이외에 도매시장과 관련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1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등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 “농수산물유통법”의 배경

현행 “농수산물유통법”은 1976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것으로서 기존에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통합하여 제정된 것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은 1973년 “도시주민에게 식료품으로 공급되는 농수산물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1조)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함으로써 농수산물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농어가경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 제1조)으로 1966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은 해방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계속된 공법적 규율의 공백을 해소하고 농수산물 유통질서를 공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었다. 그러나 당시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생활환경으로 인해 제기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한계와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엄격한 공법적 질서의 틀에 한정하려는 시도가 갖는 한계를 나타내며 비법적 도매시장이 양산되는 시장의 상황을 충분히 규율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현행 “농수산물유통법”이 1976년에 제정되기에 이른다.

“농수산물유통법”은 기존의 시장질서에서 나타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따라 비현실적인 공법적 규율을 최대한 배제하였다. 시장이라는 규율 대상의 특성상 농수산물 수요에 민감하게 민간의 경제활

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규율대상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령상의 제도를 상당부분 폐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1도시 1시장의 원칙으로 폐지하였고 복수의 법인 형태로 도매시장이 성립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대신 새롭게 제정된 “농수산물유통법”에서는 현실을 반영하여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경제활동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접근 방식을 이루고 있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공법적 관리를 받는 이른바 ‘공적 시장’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한편, 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2) 시장의 종류

현행 “농수산물유통법”에서 농수산물의 도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네 가지 유형의 거래의 장을 예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이들 네 가지 유형의 시장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법률 제3조)

1)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법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제2조 제2호)을 말한다. 제17조는 도매시장 개설에 관한 권한과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즉 도매시장은 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개설 주체가 되어 관할구역 내

에 농수산물의 도매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된다.

① 중앙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법상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다.(제2조 제3호) 즉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운데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도매시장을 말한다. 이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일반 시에서 개설한 도매시장은 제외된다. 중앙도매시장의 요건 즉 관할구역과 인접지역의 도매 중심이 되는지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에서 장관령의 형식으로 결정한다. 요컨대 중앙도매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도매시장 가운데 일종의 지역 거점 도매시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관할 부처에서 결정한 도매시장을 말한다.

② 지방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법상 지방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제2조 제4호) 즉, 농수산물유통법 제17조의 절차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으로 개설된 도매시장 가운데 중앙도매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도매시장을 말한다.

2)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유통법상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제2조 제5호) 즉, 생산자 관련 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하고 운영하는 거래의 장을 말한다.

공익법인이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말한다.(시행령 제3조 제2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1조에 따라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을 안정”시키는 것과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과 같은 공익 정책적 목적을 위해 개별법에 따라 설립되기 때문에 행정적 목적의 공법인에 해당한다. 이는 행정조직법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행정주체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공판장은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생산자 관련 단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농수산물 유통시장을 말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 권한에 관한 제43조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 허가에 관한 규정 제19조 가운데 조건부 개설허가를 규정한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법상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란 위 시장들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

한다.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절차와 그에 관한 권한은 법률 제47조에서 정하고 있다.

4)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수산물유통법에서는 위 다섯 가지 도매시장 및 공판장 외에 농수산물의 수집과 판매가 가능한 ‘농수산물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를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12호에 따라 농수산물유통센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절차와 그 권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개설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종합유통센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할 수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할 수도 있다. 유통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설치 절차와 그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시행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시장의 개설

1) 개설 및 설치 결정 권한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과 ‘종합유통센터’ 네 가지 시장 모두 개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도매시장은 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설한다. 다만, 도매시장 가

운데 시가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를 포함하고 있는 도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도매시장 개설의 허가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 그 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는 중앙도매시장이나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업무규정을 미리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도매시장의 개설에 관한 최종 결정권한은 관련 중앙부처에 있으며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도지사에게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제출한다.

공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설을 승인한다.

민영도매시장은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가 개설을 허가한다. 종합유통센터의 경우, 농수산물유통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설치 유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와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얻어 사인이 설치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후자의 경우, 설치 자체에 대한 결정 권한을 규정하지는 않고 다만 지원에 대한 의견 제시 권한만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종합유통센터는 법률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도 있고, 사인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만 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설치의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제69조에서는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시행규칙 제46조에서는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이라는 제목 하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법령에서 종합유통센터의 설치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사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

아 설치하는 경우만을 예정하고 있다.

사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법률 제69조)을 할 수 있다. 종합유통센터의 설치를 원하는 사인이 국가의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부지 구입, 시설물 설치, 장비 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 알선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46조)

사인이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때, 다른 도매시장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승인하거나 허가하는 권한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와 같은 지원을 받고자 사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지원을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계획 등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권한을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따라서, 농수산물유통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네 가지 도매시장의 유형의 개설 및 설치 절차상 사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얻어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종적인 개설 및 설치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2) 개설 및 설치 신청 주체

농수산물유통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네 가지 유형의 시장을 개설 및 설치를 위한 신청 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개설 주체라는 점에서 같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시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를 포함하고 있는 도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도매시장 가운데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모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개설을 신청하는 주체가 된다.

공판장은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법인이 공동으로 개설 승인 신청 주체가 된다. 생산자 관련 단체란 농업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하여 법률에서 ‘농림수협등’이라고 명명하여 열거하고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와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시행령에서는 공판장의 공동 개설 주체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과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이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공법인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말한다.

민영도매시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판장 개설 주체의 자격을 가진 생산과 관련 단체를 제외한 사인이 개설 주체가 된다. 이를 법률에서는 ‘민간인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종합유통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설 주체가 되거나 사인을 포함한 그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4) 시장의 운영

1) 운영 주체

농수산물유통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네 가지 유형의 시장을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도매시장의 운영에 대해 법률 제22조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시가 도지사의 업무규정 등의 승인을 얻어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시가, 그 외의 경우에는 농림부와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운영을 위탁하여야 한다. 도매시장 개설 주체는 해당 시장의 시설규모·거래액에 따라 복수의 도매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한편, 법률에서는 시행규칙을 정하는 특정 부류에 대하여는 반드시 도매시장법인을 두어 도매시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18조의2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을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부류로 청과부류와 수산부류를 지정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운영 주체로서 도매인 등 외에 ‘공공출자법인’이 있다. 법률 제24조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을 갈음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도매시장법인을 대신할 법인을 ‘공공출자법인’이라고 일컫고 있다. 즉 특별시 등 도매시장 개설 주체는 도매시장 운영을 위임할 목적으로 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도매시장의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도매시장의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는 공공출자법인은 농수산물유통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

고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공출자법인은 지방자치단체, 관리공사 및 농림수협등과 같은 공공주체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이는 출자법인 자체의 운영에 대한 경영상의 지배권을 공공주체가 보유하여 도매시장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상의 조치로 해석된다. 즉 공공출자법인은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되 공공주체가 경영상의 지배권을 보유하는 공기업의 일종이다. 상인단체나 도매시장법인도 출자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개설자가 인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자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다.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동으로 개설하는 공판장의 운영 주체에 관해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매시장내에 설치된 공판장의 운영을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법률 제46조 제5항) 본 조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판장의 공동 개설 주체인 농림수협등 생산자 관련 단체는 유통자회사를 설립하여 공판장의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법률 제70조에 따라 “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상법상의 회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즉, 공판장의 경우에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개설하지만 생산자 관련 단체가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하여 공판장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민영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해서는 법률 제48조에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민영도매시장은 개설자인 사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도매인에게 그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시장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민영도매

시장의 시장도매인에게는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의 지정에 관한 법률 제36조가 준용된다. 따라서 시장 개설자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시장도매인을 지정하게 된다.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 주체인 공공주체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 법률 제69조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종합유통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해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공판장의 공동 개설 주체인 농림수협등 생산자 관련 단체로서 법률 제70조에서 규정한 유통자회사도 여기에 포함된다.(제1호) 또한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제2호)와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 운영을 수탁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은 운영주체 선정에 대해 농산물 유통에 관한 객관적인 능력을 기준으로 한 공개 선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유통센터의 위탁 운영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 위탁을 위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도 객관적 기준에 따른 공개 선정 원칙이 적용되도록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2) 운영에 대한 감독

농수산물유통법에서 규율하는 도매시장 등에 대한 감독은 도매시장과 민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한 업무규정 형식의 규범 제정에 대한 승인권을 통한 직접적 감독과 종합유통센터 운영자에 대한 변경 명령권을 통한 감독이

있다.

도매시장의 개설 주체는 개설 결정권자에게 개설허가를 신청할 때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법률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개설허가 신청을 하는 사인은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규정에는 시장 내의 거래품목과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을 포함한 시장 기능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따라서 업무규정은 시장이라는 공공정책적 사무의 기능을 정하는 결정의 일종이다. 업무규정에는 시장의 조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제9호), 출하자 신고(제10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공시(제1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시장 이용자의 시장 기능에 대한 접근에 관한 사항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출하자의 출하 예약(제10호), 최소출하량의 기준(제18호),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과 표준하역비(제20호), 대금결제방법과 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 등(제21호) 시장 내 거래의 방식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규정은 법령에서 정한 시장 기능에 관해 사항에 대해 규범력을 갖고 시장의 이용자를 규율하게 된다.

한편, 운영관리계획서는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을 포함하여 시장의 운영에 관련된 계획을 정하는 문서이다. 운영관리계획은 업무규정과 달리 직접적으로 기능을 조직하고 거래를 규율하는 규범의 형식으로 정해지지 않지만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계획, 공공출자법인의 설립계획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계획이나 중도매인의 허가계획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시장 이용자에게 행정계획과 같은 정도의 규범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운영관리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도매시장의 대지·건물과 그 밖의 시설의 종류·규모·구조 및 배치상

황

2. 개설에 든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계획

3. 법 제21조에 따른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계획

4. 법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계획,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의 설립계획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지정계획

5.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허가계획

6. 법 제40조에 따른 하역업무의 효율화방안

7. 도매시장 개설 후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8. 해당 지역의 수급 실적과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9. 해당 지역의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별 거래 상황과 거래 전망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이 도매시장과 민영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시장 개설 결정권자가 시장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이를 통해 시장 기능의 조직과 이용자의 접근 및 거래 방식에 관한 사항을 통제하여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 업무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업무규정을 제정하는 시장 개설 주체는 개설허가를 결정하는 권한 주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률 제17조 제5항) 민영도매시장 운영규정의 수정에 대해서도 개설허가권자인 시장이나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률 제47조 제3항)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에 대한 간접적 감독 방식으로 법률 제69조 제3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

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설치 주체가 곧 감독 주체가 되기 때문에 권고의 효력에 대한 논의가 별다른 실익이 없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사인이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권고의 효력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 법률 제69조 제4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자가 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체가 설치한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와 사인이 공공주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한 경우에 운영방법과 시장 기능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 제8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변경 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와 같은 행정적 제재 수단을 취하지 않고 범죄에 적용하는 형벌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69조 제3항에서 규정한 권고는 운영방법 등에 대한 변경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을 수탁한 자가 설치 주체의 변경 명령과 같은 직접적 감독을 받는 것에 대해 영업의 자유를 주장할 개연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한 사인에게 공공주체가 위반할 경우 범죄에 이르게 되는 운영과 관련된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감독권의 정도와 제재 수단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제정 배경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어, 2016년 3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률이다. 농수산물유통법에서 “농수산물”이라 하여 농산물과 수산물의 유통을 함께 규율하고 있지만, 농산물과 구별되는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한 유통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여 동법을 별도 제정·시행을 앞두고 있다. 즉, 손상되기 쉽고 부패되기 쉬운 수산물의 특성상 유통과정에서 상품관리가 어렵고, 산지 및 소비지를 거치는 유통경로가 복잡하여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구조가 반복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러한 유통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의 부재가 지적되었다.

(2) 주요 내용

동법에서는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수산물 유통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수산물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와의 계약에 따라 수산물유통산업을 수행하는 자를 “수산물유통사업자”로 규정하며,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수산물산지위판장”,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 영업을 하는 “산지중도매인”,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수산물산지 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산지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또는 소비자 단체 등 수산물의 수요자를 “산지매매참가인”이라 하여 규율하고 있다. 또한 산지경매사 및 수산물 전자거래 등에 관

하여 적용하면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농수산물유통법과의 관계에서 수산물 유통과 관련한 부분은 동법을 우선적용하게 된다.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함)은 현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수산업과 어촌관련 사항이 「수산물·어촌 발전 기본법」의 제정으로 분리되어 나감에 따라 개정된 법률로 2015년 1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농업식품기본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동법에서는 생산자 단체의 책임으로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제3항). 동법에서 생산자 단체는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농림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서는 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가 농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2조).

또한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육가공 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촌진흥기관, 학교 등이 공동으로 연합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3조).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제정 배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직거래법”이라 함)은 2015년 6월 22일에 제정, 2016년 6월 23일에 시행예정인 법률이다.

로컬푸드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직거래 장터가 우후죽순격으로 증가하고 있어 직매장이나 직거래 장터 간의 경쟁으로 번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설립·관리 등에 있어서도 별도의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달리 다양한 농산물

의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동법의 제정을 통해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우수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법의 제정이 추진되었다.

(2) 주요 내용

1) 농산물 직거래 관련 정의

농산물직거래법에서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 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 i)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ii)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iii)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iv)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행위를 말한다.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농산물 직거래 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아직 대통령령이 입안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이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직거래 관련 범위를 개략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 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실적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농업인의 조직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이 경우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 등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지역농산물 가공 사업자가 지역농산물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지역 농산물의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광역직거래센터 육성 및 지원

시·도지사는 농산물 집적화에 의한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제조·판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지원, 공동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 공동마케팅·홍보·판로 확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갱신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제 2 절 일본의 농산물 유통관련 법제도 분석

1. 농산물 유통 등 관련 법제 개관

일본의 농산물 유통관련 법령은 크게 「주요 식량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식료·농업·농촌기본법」,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축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도매시장법」 등이 있다.

「주요 식량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주식인 미곡 및 보리와 중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조치 및 주요 식량의 정부 구매, 수입 및 매도에 관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식료자급률 목표의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채소수급조정제도’를 통해 가격안정제도와 긴급수급조정대책의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따른 가격안정제도는 농사의 소득안정, 긴급수급조정대책은 가격폭락시 재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영농자재비 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채생산출하안정법」은 주요한 야채에 대해서 일정 생산지역에서 생산

및 출하의 근대화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와 더불어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 생산자보조금의 급부, 사전체결계약의 이행확보의 교부금 요구 등에 관한 조치를 정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업진흥기구를 중심으로 과거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보증기준액을 설정하고 평균판매가격(도매시장가격)이 보증기준액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사업 참여 농가에게 보조금 등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축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식인 주요한 축산물(원료유(原料乳), 지정유제품, 식육 등)의 가격 안정을 꾀함으로써 축산 및 그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은 식품(의약품 등을 제외한 원료, 원료로 사용된 농림수산물 및 화초 포함) 유통부문의 구조개선 촉진, 유통구조의 합리화 및 유통기능의 고도화 목적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동법은 ① 식품유통부문 각 단계의 구조개선 기본방향(도매, 소매, 식품제조, 농림어업생산), ② 식품생산제조 등 제후사업, ③ 식품판매업 근대화사업, ④ 식품상업집적시설정비사업, ⑤ 신기술연구개발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매시장법」은 도매시장의 목적·정의·명칭제한 등에 관한 총칙,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 도매시장정비계획, 도매시장 개설, 도매업자, 매매거래, 감독 등 도매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2.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일본의 농산물 관련법 중 유통기구 합리화 및 유통기능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는 법으로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이 있다.

동법에서는 식품에 관련된 유통기구의 합리화와 유통기능의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도매시장에서 도매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업무를 하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도

매시장개설자 등”이라 함)가 주체가 된다. 도매시장기능 고도화사업의 내용으로는 식품의 신선도 유지 그 밖에 품질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시설정비, 식품의 구분 및 반송의 자동화 등 처리업무의 합리화 및 그 밖의 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 경매 또는 입찰에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체계 정비, 도매시장의 기능고도화에 필요한 지식·기술의 습득·촉진, 도매시장의 업무를 하는 자의 자질향상, 도매시장개설자 등 중 정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영규모 확대, 경영관리의 합리화 그 밖에 경영현대화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

또한 식품유통부문의 구조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농림수산대신에게 식품의 유통부문의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방침 수립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본방침의 내용으로는 식품 유통부문 구조개선의 기본방향, 식품생산제조 등 제휴사업, 도매시장 기능 고도화사업, 식품판매업 근대화사업, 식품상업집적시설 정비사업, 신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기본사항, 식품의 유통부문의 구조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 일반소비자 이익증진, 농림어업의 진흥 그 밖에 식품의 유통부문의 구조개선시 배려사항이 있다.

동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념정의(제2조)

1) 식품 생산제조 등 제휴 사업

식품제조업자 등(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판매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협동조합, 사업협동소조합, 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식품제조업자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구성원(이하 단순히 “구성원”이라 한다)으로 하는 것(이하 “식품제조사업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 및 농림어업자 또는 농업협동조합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법

인으로 농림어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들의 출자 또는 납입에 관계된 법인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이,

①식품제조업자 등 또는 식품제조사업 협동조합 등과 농림어업자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과의 사이에 있어서 식품의 안정적인 거래 관계 확립, ②식품 생산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의 정비 그 밖에 식품생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③식품의 신선도 유지 그 밖에 품질관리를 확실히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설의 정비, ④품질이 우수한 식품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의 정비 등의 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식품의 생산부터 소매에 이르는 일련의 유통행정(식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되는 농림수산물에 있어서는 그 생산부터 해당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이르는 일련의 유통과정)의 종합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식품에 관련된 유통기구의 합리화와 유통기능의 고도화에 특히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도매시장 기능 고도화 사업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자 또는 도매시장에서 도매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업무를 하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도매시장개설자 등”이라 한다)가 ①식품의 신선도 유지 그 밖에 품질관리를 확실히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설의 정비, 식품의 구분 및 반송의 자동화 등 식품의 처리 업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정비 그 밖에 도매시장의 시설 근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 ②경매 또는 입찰에 관련된 업무의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처리체제의 정비 그 밖에 도매시장 유통기능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 ③도매시장의 기능 고도화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촉진 그 밖에 도매시장의 업무를 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④도매시장개설자 등 중 정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영규모 확대, 경영관리의 합리화 그 밖에 경영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 등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실시함으로써 도매시장 기능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사업과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자가 다른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자와 연계하여 전술한 ①~④의 조치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것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도매시장기능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식품판매업 근대화 사업

식품판매업자또는 사업협동조합, 사업협동소조합, 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식품판매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하 “식품판매사업 협동조합 등”이라 함)이 ①식품의 구입, 제조, 보관 또는 배송의 공동화 그 밖에 식품의 판매에 관한 업무 일부의 공동화, ②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정비, ③식품의 신선도 유지 그 밖에 품질관리를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설의 정비, 식품의 구분 및 반송 자동화 등 식품의 처리업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정비 그 밖에 식품의 판매에 관한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의 근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 ④ 경영 관리의 합리화, 거래 관계의 개선 그 밖에 식품판매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등을 실시함으로써 식품판매사업의 근대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식품에 관련된 유통기구의 합리화와 유통기능의 고도화에 특히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식품상업집적시설 정비 사업

식품판매업자 또는 식품판매사업 협동조합 등의 출자 또는 납입에 관련

된 법인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이 식품상업집적시설[상당수의 식품판매업자의 점포가 집적하는 시설로 해당 시설에 부대하는 주차장, 휴게소 그 밖에 해당 시설 이용자의 편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것 중 (a)식품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그 밖에 식품구매 및 조리에 관한 일반소비자의 편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b)지역의 특색 있는 식품으로 일반소비자들의 식생활의 다양화에 이바지한다고 인정되는 것의 전시 및 판매 시설을 갖춘 것(이와 일체적으로 설치되는 창고 그 밖에 식품에 관련된 유통업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식품에 관련된 유통기구의 합리화와 유통기능의 고도화에 특히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신기술 연구개발사업

식품제조업자 등, 식품제조사업 협동조합 등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이 ① 식품의 신선도 유지 그 밖에 품질관리를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신기술의 연구개발, ②품질이 우수한 식품의 개발에 필요한 신기술의 연구개발로 전호에 정한 연구개발과 함께 실시하는 것, ③식품의 구입, 처리 또는 배송의 합리화 그 밖에 식품 유통의 원활화에 이바지하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식품에 관련된 유통구조의 합리화와 유통기능의 고도화에 특히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본방침(제3조)

농림수산대신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 유통부문의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기본 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기본방침에는 ①식품의 유통부문의 구조개선의 기본적인 방향, ②식품생산제조 등 제휴사업, 도매시장 기능 고도화사업, 식품판매업 근대화사업, 식품상업집적

시설 정비사업, 신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 그 밖에 식품의 유통부문의 구조개선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④일반소비자의 이익의 증진, 농림어업의 진흥 그 밖에 식품의 유통부문의 구조개선 시 배려하여야 할 중요사항 등을 정한다.

한편 농림수산대신은 경제사정의 변동 그 밖에 정세의 추이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기본방침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방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식량 농업·농촌 정책 심의회 의견의 들어야 한다.

(3) 구조개선계획의 인정(제4조)

식품제조업자 등 또는 식품제조사업 협동조합 등은 농림어업자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과 공동으로, 그 수행하는 사업(식품제조사업 협동조합 등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의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식품생산제조 등 제후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여 해당 계획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도매시장개설자 등은 도매시장기능 고도화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여 해당 계획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식품판매사업 협동조합 등은 그 구성원이 하는 식품의 판매사업에 대하여 식품판매업 근대화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여 해당 계획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식품판매업자 또는 식품판매사업 협동조합 등의 출자 또는 납입에 관련된 법인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식품상업집적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여 해당 계획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식품제조업자 등, 식품제조사업 협동조합 등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은 그 수행하는 사업(식품제조사업 협동조합 등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의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여 해당 계획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개선계획”에는 ①“구조개선사업”의 목표, ②구조개선사업의 내용 및 실시시기, ③구조개선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방법, ④식품제조사업 협동조합 등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이 신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시험연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농림수산대신은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그 구조개선계획이 기본 방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일반소비자의 이익 증진 및 농림어업 진흥에 기여하는 것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그 인정을 할 수 있다.

(4)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기구

1) 지 정

농림수산대신은 식품의 유통부문의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으로, 후술하는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그 신청에 따라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로서 지정할 수 있다.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지정을 한 때에는 해당 기구의 명칭, 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기구는 그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농림수산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업 무

①인정계획에 관한 구조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인정 구조 개선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된 채무를 보증하는 것, ②인정구조개선사업에 대하여 그 실시예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해당 인정구조개선 사업에 참가하는 것, ③인정구조개선사업을 하는 자의 위탁을 받아 인정계획에 따른 시설을 정비하는 것, ④전술한 업무에 의하여 정비하는 시설과 일체로서 정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일반소비자의 이익증진 또는 농림어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정비하는 것, ⑤인정구조개선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알선하는 것, ⑥지역의 특색 있는 식품 그 밖에 특히 보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식품의 유통 및 소비 증진을 도모하는 것, ⑦식품제조업자 등 또는 도매시장의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 ⑧식품의 유통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수집 및 제공하는 것, ⑨식품의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것, ⑩식품의 유통부문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회 및 상담에 따른 것 그 밖의 원조를 하는 것, ⑪전술한 업무에 수반하는 업무를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3. 「도매시장법」

(1) 일본 도매시장 개요

1) 도매시장의 역할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어 계속적으로 집하되는 수많은 다종 다량의 농수산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매업자, 가공업자, 외식업자 등에 배분할 것인가, 국민 생활에 불가결한 신선 식료품 등의 적정한 가격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생산자에 대한 신속한 결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신선 식료품¹⁴⁾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중앙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도매시장이다.

현재 청과물의 약 70%, 수산물의 약 50%는 도매시장을 경유하여 거래되고 있어¹⁵⁾ 도매시장은 일본에서 음식문화·생활양식에 중요한 중심적인 유통시스템이 되고 있다.

2) 도매시장 현황과 과제

① 도매시장의 현황¹⁶⁾

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분류되고 이외 지정시장이 있다.

i) 중앙도매시장

a) 의 의

중앙도매시장은 신선 식료품 등의 유통 및 소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도시와 주변의 지역에서 신선 식료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매거래를 하는 중핵적 거점이 되어 유통개선에 기여하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b) 개설 요건 및 주체

도도부현 또는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에 지방공공단체가 농림수산대신의

14) 도매시장법 제2조(정의) ① “신선 식료품 등”이란 채소, 과일, 어류, 육류 등의 신선 식료품 그 외 일반 소비자가 일상생활용으로 제공하는 식료품 및 화훼 그 외 일반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농축수산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그러나 해가 거듭할수록 일본의 중앙도매시장에서의 거래점유는 줄어들고 있다.
동경도 중앙도매시장 홈페이지 행정정보 참고.

16) http://www.jmma.or.jp/s_03.htm. 공익사단법인 일본식육시장도매협회 홈페이지 2015년 10월 15일 최종 방문.

인가를 얻어서 개설한다. 식육부문에서는 일본에 10개시장이 있다고 한다.

ii) 지방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으로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도매시장으로서 식육 지방도매시장은 도매시장의 면적이 150㎡ 이상인 것으로 전국에 22개 시장이 있다.

개설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조합으로서 일정규모의 도매장을 가진 신선 식료품 도매시장을 말한다.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정의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아서 도도부현 또는 인구 2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신선식료품 도매시장	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조합 등이 개설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매장을 가진 신선식료품 도매시장
시장의 개설, 감독	개설주체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 농림수산대신의 감독	개설주체는 민간기업이나 제3섹터도 가능 지사의 감독
시장업자에 의 규제		
도매업자	농림수산대신의 영업허가	지사의 영업허가
	<p>거래규제</p> <p>1. 신선식료품 등의 구분에 응한 판매방법(경매, 입찰)의 지정</p> <p>2. 차별적 취급금지</p> <p>3. 수탁거부의 금지</p> <p>4. 중도매, 매매참가자</p>	<p>거래규제</p> <p>1. 신선식료품 등의 구분에 응한 판매방법(경매, 입찰)의 지정</p> <p>2. 차별적 취급의 금지</p>

	이외의 자에의 도매의 제한(제3자판매의 규제) 5. 도매의 상대방으로서 매수하는 것을 금지 6. 시장외에서 판매행위의 규제	
	농림수산대신의 감독	지사의 감독
중도매업자	개설자의 허가	개설자의 영업규정에 의한 임의의 설치
	거래규제 1. 매수대금즉시지불의 의무 2. 도매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매입하는 행위의 원칙금지(직하인수규제) 3. 시장 외에서의 판매행위의 규제	거래규제 매수대금의 신속한 지불의무
	개설자의 감독	
매매참가자	개설자의 승인에 의한 임의의 설치 개설자의 감독처분	개설자의 업무규정에 의한 임의의 설치

iii) 지정도매시장

지방시장 중 “축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부칙 10조에 의하여 농림수산대신으로부터 중앙도매시장에 준하는 시장으로 간주되어 지정된 시장을 지정시장이라고 하며 현재 18개 시장이 지정을 받고 있다. 이 지정시장의 荷受기관인 도매업자와 상기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업자가 본 시장협회의 회원으로 되어 있다.

iv) 도매시장의 수

일본 전국의 도매시장의 종류와 수는 아래와 같다. 식육 시장은 다른 신선물품의 시장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수이지만 그 기능은 수행하고 있다.

	중앙도매시장 (2011년4월)	지방도매시장 (2000년 4 월)
청과물	58	566
수산물	44	소비지277 · 산지331
식육	10	22(종합시장을 포함하면 30)
화초	21	152
그 외	7	—
시장 수	72(44개 도시) ¹⁷⁾	1169

* 1개 시장에서 복수의 신선 식료품을 취급하고 있는 시장이 있으므로 각 신선물품의 시장 수와 합계의 시장 수는 부합하지 않는다.

② 도매시장의 과제

도매시장 유통에서는 시장 경유률의 저하, 취급 금액의 감소, 업자의 경영 악화(중앙도매시장의 적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의 시정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또 BSE(2001년 9월)등의 발생으로 소비자 식탁 안전·안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도매시장에서의 품질 관리가 낙후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수입 야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 측면은 유통비용 절감, 안전·안심한 농산물의 제공에 의한 고부가 가치화, 계약 재배 추진

17)

<https://ja.wikipedia.org/wiki/%E4%B8%AD%E5%A4%AE%E5%8D%B8%E5%A3%B2%E5%B8%82%E5%A0%B4>. 참고.

등에 의한 다양한 판로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산 측면·소비 측면 양면의 기대에 응하고 도매시장이 “안전·안심”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있다.

3) 도매시장 제도의 재검토 경위

식품유통심의회 도매시장부회(현재의 식량농업·농촌정책심의회)는 2000년 8월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의 도매시장법 개정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시장 관계자의 경영 문제, 도매시장에 관한 제반 규제, 도매 수수료 등의 문제에 대해서 도매시장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했다.

2001년 3월 30일에는 규제개혁추진 3개년 계획이 결정되었는데 이 계획에서는 “도매시장에 대해서 도매시장 외 유통서비스산업에 대해서 비용, 서비스 면에서 맞설 수 있는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자 도매시장 관계자의 경영 문제, 도매시장의 여러 기능의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면서 도매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2) 도매시장법 개관

1) 제정배경

중앙도매시장법은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신선 식료품 등의 유통 사정의 변화, 즉 도시화의 진전, 소비의 고도화·다양화, 생산지의 대형화, 소매업의 근대화 등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더 이상 대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중앙도매시장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청을 받아서 새로운 “도매시장법”이 1971년 4월 3일 공포되어 동년

7월 시행되었다.

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3가지 점이었다.

①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 및 중앙도매시장정비계획

도매시장의 정비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농림수산대신은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 및 “중앙도매시장정비계획”을 책정하고, 도도부현지사는 이에 근거해서 “도도부현 도매시장정비계획”을 책정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입찰매매의 원칙 및 위탁 판매의 원칙 등을 규정

중앙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 방식 등을 개정하여, 신선 식료품 등의 매매거래에서 적절한 가격 형성과 거래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유통 질서를 유지하는 등의 견지에서 경매 또는 입찰매매의 원칙 및 위탁 판매의 원칙과 그 예외 조치에 대해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도매의 상대방의 제한, 경매인의 등록, 중도매업자의 업무의 규제 등에 대해서 정하도록 하였다.

③ 지방도매시장의 개설

중앙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에서 그 시설이 일정 규모 이상의 것을 “지방도매시장”으로 하고 그 개설 및 도매의 업무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2) 도매시장 여건의 변화와 도매시장법의 개정

① 1999년 7월 개정

도매시장 환경의 변화는 뚜렷하다. 신선한 식료품을 생산하는 산지에서 대형 출하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이른바 산지 출하자의 대형화에 의해서 유통에 대한 발언이 높아지는 등 산지에서의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소비의 다양화가 생겨나고, 또한 할인점 등 유통 채널의 다양화를 통하여 경쟁

이 심화되는 등 소비지도 변화함으로서, 도매·중도매 등의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1999년 7월에 중앙도매시장 관련 사업자의 경영 체질 강화, 중앙도매시장에서의 거래 방법의 개선, 중앙도매시장의 재편 등의 추진, 지방도매시장 활성화의 4가지 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매시장법을 개정하여 도매시장의 새로운 전개와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② 2004년 6월 개정

그 뒤 도매시장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생산·소비 양쪽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안심”하고 “효율적”인 유통 시스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에서의 거래 규제 완화 및 적절한 품질 관리 추진, 도매시장의 재편의 원활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도매시장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2004년 6월 9일에 시행되었다.

2004년 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1. 도매시장의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계획수립 2. 중앙도매시장의 개설, 공정거래 확보 및 도매업자 등의 건전한 경영추진 3.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과 적절한 운영의 확보 4. 도매시장의 정비에 대한 조성,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한 별칙 조치, 5. 도매시장에서의 품질 관리의 고도화, 6. 상물일치 규제 완화, 7. 도매업자 등의 사업 활동에 관한 규제 완화, 8. 도매시장의 개편 촉진, 9. 개업자에 대한 재무기준의 명확화, 거래정보 공표의 충실 등이다.

3) 체제와 기본방침

① 제정 목적

도매시장의 정비를 계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조치, 도매시장의 개설 및 도매시장에서의 도매 그밖에 거래에 관한 규제 등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정비를 촉진하고 그 적정하면서 건전한 운영을 확보함으로써 신선식품(生

鮮食料品)등의 거래 적정화와 생산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② 구 성

총 7개장, 8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제1조) -정의(제2조) -명칭의 제한(제3조)
제2장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 등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제4조) -중앙도매시장정비계획(제5조) -도도부현도매시장정비계획(제6조)
제3장 중앙도매시장	제1절 개설(제7조~제14조) 제2절 도매업자등(제15조~제33조) 제3절 매매거래(제34조~47조) 제4절 감독(제48조~제51조) 제5절 잡칙(제52조~제54조)
제4장 지방도매시장	제1절 개설 및 도매의 업무에 대한 허가(제55조~제60조) 제2절 업무에 대한 규제 및 감독(제61조~제66조) 제3절 잡칙(제67조~제69조)
제5장 도도부현도매시장심의회	-도도부현도매시장심의회(제71조)
제6장 잡칙	-구성(제72조) -조례와의 관계(제74조) -허가 또는 인가의 제한 또는 조건(제75조)
제7장 벌칙	제77조~83조

③ 기본방침

도매시장은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생산자의 의향을 반영하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등의 의향을 반영하는 중도매업자에게 매매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역할로 하는 유통기구이다. 도매시장 거래는 공정거래 확보와 질서유지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 속에서 관계 당사자 간의 자기책임에서 활발한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a) 음식의 안전·안심에 대한 관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 등에서 품질 관리의 고도화를 위한 조치를 정할 것

(b) 유통의 효율화·고도화 등에 이바지하고자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고 도매업자가 중도매업자 및 매매 참가자에게 도매를 할 경우에 규제 완화, 도매업자에 의한 계획적이고 기동적으로 집하할 수 있는 매수 집하의 자유화, 省¹⁸⁾에서 제삼자 판매·상품을 직접 생산지에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집하의 탄력화 등을 규정하는 등 상황 변화에 따른 규제 완화를 실시하는 동시에 기능과 서비스에 걸맞은 도매 수수료의 징수를 가능하게 하고

(c) 도매시장의 재편·통합의 원활화에 필요한 규정의 정비, 도매·중도매업자의 업무 내용의 다각화, 중도매업자의 운영 건전화 조치의 도입 등에 의한 시장 기능의 강화 등을 조치했다.

(3) 도매시장법의 주요 규정

1) 음식의 안전·안심에 대응한 도매시장에서의 품질 관리의 철저(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관계)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심할 수 있는 신선 식료품 유통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대신이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 등에서 품질관리的高도화를 위한 조치를 정하고, 개설자가 업무규정에서 품질관리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우리나라의 부령에 해당

BSE발생 이후 음식의 안전·안심의 확보가 음식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다. 도매시장이 앞으로도 신선 식료품 유통에 대해 중심적인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구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도매시장에서는 저온 도매매장의 정비가 낙후하여 생산자와 실수요자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매시장에서의 음식의 안전·안심을 철저히 한다는 관점에서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에 “품질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음식의 안전·안심에 대한 관심의 고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했다.

또 중앙도매시장의 각 개설자가 정한 업무규정에도 온도관리 방법과 품질관리책임자의 배치 등의 “품질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도매시장에서의 품질 관리의 철저를 도모하도록 했다.

또 수산물, 식육시장에 관한 대규모 시설 정비에 있어서 HACCP적인 관리(저온화, 외기차단 등)을 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2) 도매시장에서의 거래규제의 완화(제23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4조, 제51조 관계)

도매업자 등의 사업활동의 자유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매업자 등이 매수집하, 시장개설구역 밖에서의 판매, 기능, 서비스에 걸맞은 위탁 수수료의 징수를 하는 것을 가능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실시한다.

① 商物一致 규제 완화(제39조 관계)

현행의 도매시장법은 시장 내에 현물을 반입하고 도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물일치 원칙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은 도매시장 시설, 부지 외의 장소에서 도매업자가 거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전자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거래 방법으로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서 도매를 할 때는 시장 내에 현물을 반입하지 않고 도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 채소 등은 농가 ⇒ 농협 출하장 ⇒ 시장 ⇒ 슈퍼로 유통되던 것이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시장의 부분이 사라지고 농협의 집하장에서 직접 슈퍼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물류비 삭감과 시장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기능을 잃고 슈퍼 메이커가 가격도 정할 수 있는 “시장외 유통”, “계약농가 유통”이 늘어났다. 도매시장에서의 적정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저장성이 떨어지는 신선 식료품 등을 시장에 현물로 반입하고 매수자가 그 수량·품질을 확인하면서 공개·집중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는 IT의 발달 등에 의한 신선 식료품 등의 유통에서도 인터넷 등을 활용한 수주와 발주 시스템이 설치되어 규격성 있는 식품은 현물을 보지 않아도 전자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적절한 가격 형성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상물일치 규제에 인터넷 등에 의한 수주와 발주를 한 상품에 대해서도 시장 내 반입이 의무화되어 물류비용이 증대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 때문에 상물일치 원칙 자체는 계속 유지하되, 도매시장 유통의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일정한 규격성 있는 물품에 대해서 개설자의 승인¹⁹⁾을 받아서 적절한 가격 형성상 지장이 없는 형태로 인터넷을 활용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상물일치 규제의 예외로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② 위탁집하를 완화하여 매수집하의 자유화(제38조 관계)

도매시장법은 도매업자가 매수 집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도매업자가 수급 조정을 하여 도매수수료 이상의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

19)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품목에 한정된다.

고, 도매업자의 재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도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²⁰⁾으로 도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위탁집하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²¹⁾

매수집하에 대해서는, 산지·할인점의 대형화 및 수입 증대에 대응한 신선 식료품 등의 생산·유통을 통한 효율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그 비율이 현재도 증가 경향에 있다.

또 유통의 효율화 관점에서는 도매업자가 생산자의 재배 현황 및 실수요자의 수요 상황에 대응하고 계획적인 매수집하를 실시하고 이를 중도매업자 등을 통해서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생산자와 실수요자의 효율적인 생산활동 등을 촉구하고 불필요한 재고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정보화의 진전 등에 의한 도매업자가 수급 조정을 실시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매수집하의 자유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③ 제삼자 판매·직접 상품을 생산지에서 가져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

도매업자의 판매상대방을 중도매업자, 매매참가자 이외의 자로 확대하는 것 또는 중도매업자의 신선 식료품 등의 수입선을 자기가 속한 도매시장의 도매업자 이외로 확대하는 직하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도매시장에서의 적정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매업자와 중도매업자 등이 서로 협력하여 가격 형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매업자는 시장 내의 중도매업자, 매매 참가자에게 도매를 하고 중도매업자는 시장 내의 도매업자로부터 사들인다는 도매시장 내 거래의 기본원칙(제삼자 판매, 직접 상품을 생산지에서 가져오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은 유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20) 이른바 자기계산에 의한 도매의 금지로서 도매업자가 도매시장 밖(산지)에서 출하자와 교섭해서 가격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21) 다만, 개정전법으로도 그 예외로서 저장성이 높은 물품과 시장의 수급이 안정되어 있는 물품 등은 매수집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a) 도매상이나 중도매업자가 농림어업자 등 및 식품제조업자 등과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농수산물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등을 실시하는 경우,

(b) 지방의 도매시장의 집하력 향상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복수의 시장이 공동 출하, 공동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설자가 시장에서의 거래에 지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

위 두가지 경우에는 省습에서 제삼자 판매와 직접 상품을 생산지에서 가져오는 것을 예외 조치의 대상으로서 허용함으로써 도매의 탄력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도매회사는 직접 시장 밖의 슈퍼나 식당 등(매출인, 소비자)에 판매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고 중매회사는 시장 내 점포에서는 도매회사로부터 산 상품만 팔게 되어 있었는데 법개정으로 서로의 영역 진출이 인정되었다.

도매회사는 슈퍼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중개회사는 시장 내의 가게에 스스로 찾아서 갖고 온 제품들을 진열할 수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모두 신고가 필요한 것과 극히 일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개회사가 불리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 운용의 재검토는 시장 밖 유통을 시장 내에 흡수, 시장 관계자의 활동분야를 넓히기 위한 조치이며 도매시장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또 이들 예외 조치는 계약에서 품목, 수량, 실시 기간 등을 정한 다음 개설자의 인허가에 의해 혼란 없이 운용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조치와 함께 복수의 시장 간의 연계 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시장 간 연계에 의한 최적의 물류 시스템 확립을 실증하는 “지방도매시장연계물류최적화추진사업”(예산 조치) 등을 실시하였다.

④ 도매 수수료의 탄력화

도매시장법 제9조 제2항 제4호에 위탁수수료 사항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도매업자의 도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업무 규정 등에 규정하고 있어서 전국 일률적으로 그 수준이 고정²²⁾되어 있어서 도매업자가 기능·서비스에 걸맞은 도매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거래 서비스 시장 원리가 작용하지 못한 점을 시정하였다.

즉 도매수수료는 2009년 4월부터 도매회사의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각 도매회사가 자신들이 생선이나 채소의 도매수수료를 정해서 신고하고, 농림수산성이나 도도부현이 회사의 경영 상황을 감안하여 이를 승인하면 변경 가능하게 되었다.

도매 수수료 외에 수수료를 공정하고 있는 예가 없어서 “규제개혁추진3개년계획”에서는 도매시장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2003년 4월에 정리된 “식품 유통의 효율화 등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는 “기능·서비스에 걸맞은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징수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경과를 거쳐서 도매 수수료의 탄력화가 실시되었다.

3) 도매시장의 개편 촉진(제4조, 제5조,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3조의6)

① 개편의 계기

기존의 개편 방향은 복수의 지방도매시장을 통합해서 중앙도매시장으로, 또는 소규모 중앙도매시장을 통합해서 중앙도매시장의 집하, 분하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으나 2004년부터 오히려 경영이 부실한 중앙도매시장을 지방도매시장으로 전환²³⁾하도록 하는 도매시장의 개편을

22) 2009년 이전까지는 예를 들면 도쿄도내의 시장에서는 생선은 경매 가격의 5.5%가 도매 회사의 수수료, 식육은 도매액의 3.5%, 야채는 8.5%, 과일은 7%로 결정되어 있었다.

23) 도매시장법 제13조의 5.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²⁴⁾

정보화의 진전, 도로망의 발달 등에 의한 유통의 광역화와 할인점 확대가 진행되는 반면에 지방중소시장의 집하력은 저하되고 도매업자의 경영 악화와 유통 비용의 증대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도매시장의 개편에 따른 집하력 향상, 효율적인 유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도매시장정비계획에서 지역의 특성·요망을 충분히 배려하여 시장별 자율성을 기본으로 운영의 광역화 또는 지방도매시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중앙도매시장의 명칭을 규정하고, 도매시장 재편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절차 규정을 정비한다.

②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

도매시장의 역할을 가격 형성이나 유통 거점이 되는 공공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첫째, 네트워크화에 의한 기능 강화의 촉진이나 통합에 의한 규모의 경제, 둘째, 자유도가 높은 지방 도매시장으로의 전환 등 지역의 시장 특성을 살린 다양한 방향으로 도매시장의 재편을 추진하였다.

③ 지방도매시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중앙도매시장의 명칭을 기재하는 것을 허용

중앙도매시장 정비계획에 운영의 광역화 또는 지방도매시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중앙도매시장의 명칭을 기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운영의 광역화나 지방도매시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경우에 개설자나 도매업자 등의 사무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④ 과 제

도매시장은 소비자에게 불가결한 신선 식료품을 날마다 거래하는 장소이

24) 중앙도매시장에서 지방도매시장으로의 전환허용은 도매수수료의 탄력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기 때문에 그 거래가 혼란스럽게 되면 산지나 지역 유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재편에 있어서는 지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에 지역특성을 배려한 도매시장의 조정의 기준을 명시함과 동시에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에 입각해서 정해지는 중앙도매시장정비계획에 대해서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지역 특성·요망을 충분히 배려하고 시장별 자율성을 기본으로 한다.

4) 도매·중도매업자의 업무 내용의 다각화 및 개설구역 내 판매행위 허용

도매시장법은 도매업자들이 도매 업무 이외의 업무나 사업에 공들인 나머지 도매업자의 업무 운영 및 재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도매시장 도매업자가 겸업 업무를 영위하려는 때와 다른 법인에 대한 지배 관계를 가지기에 이르렀을 때는 도매업자는 농림수산대신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겸업 업무 등에 관한 신고규제에 대해서는 (1) 도매업자의 경영 체질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업무 다각화가 필요하거나 (2) 1999년의 도매시장법 개정으로 도매업자의 재무 기준과 이를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의 경영개선명령조치를 제도화하고, 도매업자의 재무내용에 대한 시정조치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하였다.

도매시장법은 도매상이나 중도매업자에게 시장 내 활동에 전념하는 것과 함께 시장 밖에서 판매 행위나 매입 행위 등을 함으로써 시장 내의 수급 조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도매상이나 중도매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의 도매 및 매입 등을 제외하고 개설 구역 내에서 판매 행위나 매입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선 식료품 등의 수급 완화나 정보화의 진전 등에 의한 전국적

인 가격의 표준화가 진행되어 도매업자 등에 따른 수급 조정이 어려워진 결과 이런 도매상이나 중도매업자 규제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도매·중도매업자의 개설 구역 내에서 판매 행위 등의 금지 규제를 폐지하였다.

이런 도매·중개시장 외 판매 활동에 대해서는 시장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 시장의 실태에 입각하고 시장거래위원회의 관여 아래 개설자의 승인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하는 구조가 마련되도록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5) 중도매업자에 대한 재무기준의 명확화(제51조 관계)

중도매업자의 업무의 적정하고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중도매업자의 재무기준을 정하고 이에 기인한 경영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중도매업자는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 소매업자에 대한 신용 공여 등으로 도매시장의 대량 집중 거래의 원활한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도매시장에서의 취급 금액의 저하 등으로 적자 경영이 계속되고 있어 1998년 이후 경영 파탄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중도매업자의 재무 면에서 경영 개선을 조속히 촉구할 필요가 있어서 중도매업자의 재무개선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규정으로 중도매업자의 재무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개설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책정 등 경영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매업자에 대한 재무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되고 있다.

6) 거래 정보의 공표 내용의 충실(제46조의2관계)

도매업자가 실시하는 거래정보의 공표는 투명성 높은 시장거래를 확보한

다는 관점에서, 경매, 상대 매매 등의 구분별 판매예정수량을 공표하는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공개 내용을 충실히 할 것을 도모한다.

도매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매업자에게 도매 예정 수량의 공표 및 도매 이후 가격·수량의 공표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도매업자의 도매 예정 수량 공개는 합계 수량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소의 중도매업자나 매매 참가자를 중심으로 당일 거래량과 가격 형성 과정이 뚜렷하지 않고 적절한 판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생기고 있다.

상물일치 규제의 예외로 자리 매김하는 인터넷을 활용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한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도매업자의 정보공개 내용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매개시 전에는, 상물분리 거래, 제삼자 판매를 구분하고 도매예정 수량이나 주요 산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과 함께 도매 종료 후에 실시하는 도매 수량, 가격의 공표, 상물분리거래, 제삼자 판매를 구분하는 것으로 했다.

(4) 소 결

매수집하의 자유화, 도매수수료의 탄력화 등의 제도가 출하비용을 저감시켜서 산지의 유지, 육성으로 나타날 지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중앙도매시장으로부터 지방도매시장으로의 전환이 소매업자의 물건구입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일본 도매시장법은 신선 식료품 등의 도매거래를 산지의 변화, 소비의 변화, 유통의 변화라는 큰 흐름을 반영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 4 장 현행 농안법의 법령체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현행 법령체계의 분석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경과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1976년 12월 31일 제정(법률 제2962호) 이후 15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5년 6월 22일에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78년 12월 5일 개정법률(법률 제3118호)

1978년 12월 5일에는 제10조의2(과잉생산시의 생산자보호)를 신설하였고, 기금관련 조항의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관리체제를 개선하였다. 동 개정을 통해서도 공급탄력성이 낮은 농수산물은 수요의 불균형으로 그 가격이 불안정하므로 농수산물의 증산을 지속화하여 공급의 안정을 기하고 가격진폭이 큰 농수산물은 그 수요조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의 수매·비축사업을 확대하고 필요한 최소물량을 상시비축하며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은 필요한 경우 이를 수매처분을 하여 그 안정적 생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비축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용자 또는 대하만 인정하던 농수산물가격안전기금을 필요한 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1986년 12월 31일 개정법률(법률 제3885호)

1986년 12월 31일에는 제37조의2(교육훈련등), 제59조의2(실태조사등)을 신설하였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종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부류마다 개설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해당 개정을 통해 각 부류별로 개설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개설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도매시장의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부류별로 적정수의 지정도매인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개설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도매시장관리공사가 시설관리, 거래질서 유지 기타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도매시장에 부수되는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다.

(3) 1993년 6월 11일 개정법률(법률 제4554호)

1993년 6월 11일에는 제17조의2(지정도매법인의 매취상장의무), 제57조의2(농수산물소매업자협동조합), 제57조의3(농수산물소매유통의 개선), 제59조의3(평가실시), 제63조의2(과징금처분)을 신설하였다. 해당 개정을 통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하여 중앙도매시장중심의 종합유통 개선을 추진하고 국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정도매인·중도매인 등 각종 유통참여자의 기능과 거래행위를 명확히 정하였으며,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확보하게 하고, 경매사의 지정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대량입하품목·규격포장품목의 우선판매제도, 도매시장등의 관리·운영에 대한 평가제도, 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소비자 단체·소매상·협동조합·소비지지정도매법인이 산지공판장의 경매에 참가, 직접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유통체계의 다원화를 제도화하였다.

(4) 1994년 11월 1일 개정법률(법률 제4785호)

1994년 11월 1일에는 제17조의2(공공출자법인), 제25조의2(중도매인의 업무범위등의 특례), 제27조의2(수집상의 등록), 제30조의2(거래의 특례), 제30조의3(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제33조의2(하역업무), 제39조의2(산지집하장

의 공판장운영), 제39조의5(도매시장공판장 운영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2(농수산물 종합처리장의 설치·운영), 제43조(포전매매의 계약), 제55조의2(유사도매시장의 정비), 제56조의2(도매시장법인의 대행), 제57조의4(농수산물물류센터의 설치), 제57조의5(유통자회사의 설립), 제58조의2(출하물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신설하였다.

동 개정을 통하여 중매인의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변경하고 그 기능은 도매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중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지유통의 공정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포전매매(밭떼기)를 제도화하고, 산지 수집상의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지정도매법인에 대해서는 그 명칭을 도매시장법인으로 변경하고, 그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매시장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 등이 공동출자한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도매시장 관리업무 및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도매시장의 공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설자나 다른 도매시장법인 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중도매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등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도매시장의 집하·판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외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엄격한 조건 하에 도매시장법인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 대한 판매를 인정하고, 중도매인에게도 예외적으로 직접 출하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도 동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또한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가격 제시제와 출하손실보전제를 도입하였으며, 개설자가 하역업무 개선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공출자법인이 하역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하였다.

도매시장 이용자에게 환경·위생 등 질서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가 개설한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의 중도매인허가나 매매참가인 등록은 도매시장법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중도매인이 여러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지농어민과 도시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의 농수산물물류센터와 유통자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1994년 12월 31일 개정법률(법률 제4847호)

1994년 12월 31일에는 제10조의3(농산물의 수입추천 등), 제10조의2(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65조의2(벌칙)을 신설하였다. 동 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양허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고,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여 이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동기금의 조성재원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농산물의 수입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하였다.

(6) 2000년 1월 28일 개정법률(법률 제6223호)

2000년 1월 28일에는 전부개정이 있었는데, 이 때에 제5조(농업관측), 제8조(가격예시),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제30조(출하자 신고),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제47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 제78조(심의회 등의 설치)등이 신설되었고, 종전 조문 중 13개 조문이 폐지되면서 91개 조문으로 전면개편되었다.

동 개정을 통하여 가격의 등락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생산면적·작황·재고물량·소비동향·해외시장정보 등을 조사·분석하는 농업관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해당 농산물의 농업관측결과, 예상경영비, 지역별 예상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산자의 보호를 위한 부한 가격을 농림부장관이 예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생산자 등은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유통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에 대하여 그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매시장에서의 법래제도 다양화를 통하여 출하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출하자의 하역비 부담절감 및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유도하였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인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매시장법인의 장부비치제도, 보증금납부제도, 폐업허가제도, 휴업승인제도 및 매매참가인의 등록제도 등을 폐지하였다.

(7) 2004년 12월 31일 개정법률(법률 제7275호)

2004년 12월 31일에는 농림부 장관이 운용·관리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 기금에서 지원되던 수산부문을 기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여 수산부문의 기금지원절차를 간소화하였다.

(8) 2007년 1월 3일 개정법률(법률 제8178호)

2007년 1월 3일에는 제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38조의2(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등이 신설되었고, 제71조(규격화의 촉진 등)가 폐지되었다.

동 개정을 통해서도 도매시장법인 간 또는 시장도매인 간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유통환경의 변화로 도매시장법인의 대형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얻으면 도매시장법인 간의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시장도매인 간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매사자격시험의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수탁거부금지의무를 완화하였다. 수탁거부금지의무완화와 관련해서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금지의무로 인하여 도매시장에 미등록 출하자의 출하품 및 유해농산물 등이 유입되어 경락가격 하락 및 쓰레기 과다발생이 있음에 따라 유통명령 위반 출하품, 미신고 출하자의 출하품, 안전성검사결과 기준미달 출하품 및 최소출하량 기준 미달 출하품 등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신설하였는데, 도매시장개설자는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전성 검사결과 기

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 거래과정에서 유통주체 간 또는 거래당사자 간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출하자 간, 유통인 간 또는 출하자와 유통인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9) 2008년 12월 26일 개정법률(법률 제9178호)

2008년 12월 26일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가 폐지되었고, 2010년 1월 25일에 제70조의2(농수산물전자거래의 촉진 등), 제70조의3(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 신설되었다. 동 개정을 통해서도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가 폐지되었고,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위탁기관을 변경하였다. 또한 거래물품의 도매시장 반입예외를 규정하였는데, 전자거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외에도 일정기준 이상의 지정된 시설에 보관·저장 중인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경우에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그 견본으로 거래 및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유통비용의 절감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10) 2011년 7월 21일 개정법률(법률 제10886호)

2011년 7월 21일에는 조문의 신설이나 폐지없이, 전조문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으로 정비하였다.

(11) 2012년 2월 22일 개정법률(법률 제11349호)

2012년 2월 22일에는 (도매시장의 운영 등), 제32조(매매방법), 제41조의2 (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등을 신설하였다. 동 개정을 통해서는 시장도매인제 확대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도매시장에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하던 것을 부류별로 정하는 부류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의무화하여 시장도매인에 의한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수산물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승인, 중도매입의 허가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방식을 원칙금지·예외적 허용방식에서 원칙허용·예외적 금지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매매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유통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원칙으로 규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하되, 출하자의 매매방법 지정요청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에 따른 가격변동을 축소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하였다.

또한 도매시장 개설자로 하여금 출하대금과 판매대금의 결제를 위한 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금결제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였으며, 농림수산물부장관으로 하여금 포전매매의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 및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관이 중앙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도록 도매시장개설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매시장법인

은 농림부장관에게 업무집행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검사 및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였다.

(12) 2013년 8월 13일 개정법률(법률 제12059호)

2013년 8월 13일에는 산지유통인의 개념이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하였다. 동 법률상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지유통인을 일반인은 물론 산지유통인 당사자도 개인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있어, 유통질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명확히 하였다.

(13) 2014년 3월 24일 개정법률(법률 제12509호)

2014년 3월 24일에는 중도매인 간 거래의 제한적 허용(제3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제46조제2항, 제82조제5항제6호의2 및 제88조제7호의2)과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고 중도매인 명의대여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제25조제5항제2호, 제82조제5항제2호의2 및 제88조제3호의2)을 신설하였다.

동 법률상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중도매인 명의를 대여받아 영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도매인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가 금지되어 중도매인이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다양한 농수산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중도매인 간의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도매시장 개설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평가체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화하였다.

(14) 2015년 2월 3일 개정법률(법률 제13131호)

2015년 2월 3일 개정법률에서는 현행법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죄를 이유로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허가·임면을 제한하고 있으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중도매인의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이를 일정기간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는 등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발견됨에 따라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하여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15) 2015년 6월 22일 개정법률(법률 제13354호)

2015년 6월 22일에는 경매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상향입법하였다. 즉, 법률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경매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험응시자의 자격제한과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시행령에 규정된 부정행위자 응시제한에 관한 경매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응

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입법하였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부담금의 감면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가락동 도매시장과 같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가 개설하여 산하 공사(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현대화를 추진하려면 과밀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재원부족으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한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 체납 도매시장법인 등이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던 것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현행 법률 체계 및 문제점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함)은 총 8장 9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6년 제정 이후 15차례(타법 개정은 제외)나 개정이 있었던 만큼, 환경변화 및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한 조문신설 혹은 폐지도 여러 차례 있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
제3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현행 제3장 및 제4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특별히 도매시장제도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공판장 등의 규율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경매사 등 시장에서 거래를 담당하는 주체들에 대한 규율도 복잡하게 되어 있다. 또한 정책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의 농수산물 유통 관련 정책과 개별 시장규제가 혼재되어 있는 문제점도 있다. 이로 인하여 법령체계가 복잡·난해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가 어려운 측면이 지적되고 있다.

도매시장은 1993년 6월 11일 개정법률(법률 제4554호)을 통해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하기 시작했고, 2000년 1월 28일 전부개정법률(법률 제6223호)을 통해서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입된 바 있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입되면서 이에 대비하여 기존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주체이면서 동시에 개설자인 경우를 공영도매시장이라 부르고 있지만, 법에서 공영도매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민간의 투자로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자가 되어 있는 경우를 일반법정 도매시장이라 부르고 있으나, 이 또한 법령상의 구분 기준은 아니다.

한편, 현행법은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으

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현재의 도매시장 제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항에서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규율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항삭제와 개정, 추가 등이 반복됨에 따라 각각의 규정내용을 파악하기가 난해한 측면이 있다. 또한 민영도매시장의 경우도 개설자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은 중앙·지방 도매시장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장에서 규율하는 등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개설자에서 차이를 보일 뿐, 상당부분의 제도적 규율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면, 다른 도매시장 규율과 동일선상에서 규율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 2 절 법령 체계 개편방안

1. 제1안

(1) 개 관

제1안은 현행법 제3장(농수산물 도매시장), 제4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및 제6장(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의 3개 장(章)을, 제3장(도매시장 등의 개설 및 관리·운영)과 제4장(농수산물 유통정책)의 2개 장(章)으로 정비하여, 현재 총8장으로 구성된 것을 총 7장으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제1안의 경우, 제1장(총칙)과 제2장(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 제5장(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제6장(보칙) 및 제7장(벌칙)의 경우는 큰 변동 없이 그대로 두고, 주로 도매시장 관련 규정 및 유통정책과 관련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재배치하여,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보완을 꾀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전체 체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 행	개편안
제1장 총칙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 제3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 제3장 도매시장 등의 개설 및 관리·운 영 등 제1절 도매시장 등의 개설 제2절 도매시장 등의 관리·운영 등 제3절 매매·거래 등 제4절 기타 농수산물 유통기구 등 제4장 농수산물 유통정책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주된 변동이 있는 제3장과 제4장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3장은 실제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고려하여 4개 절(節)로 구분하고 제1절(도매시장 등의 개설), 제2절(도매시장 등의 관리·운영 등), 제3절(매매·거래 등), 제4절(기타 농수산물 유통기구 등)으로 조문을 재배치하였다.

제1절(도매시장 등의 개설 등)에서는 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공판장의 순서로 개설과 관련한 사항들을 배치하였다. 제43조(공판장의 개설)을 별도의 장에서 규율하기 보다는 도매시장의 개설과 함께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도매시장 등의 개설 등”이라 명명하고 조문을 배치하였다. 제47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 역시 제1절(도매시장 등의 개설 등)으로 조문 위치를 이동하였다.

제20조(도매시장개설자의 의무),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은 제2절(도매시장 등의 관리·운영 등)으로 조문위치를 이동하였으며, 제48조(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도 제2절(도매시장 등의 관리·운영 등)으로 이동하였다.

조문위치가 크게 변경된 규정 중 하나로 현행 제6장(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에 속해있던 시설기준(현행 제67조제2항) 관련 내용이 있는데, 도매 시장 등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므로 도매시장 등의 개설과 관련한 조항과 나란히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제3장제1절로 이동하였다.

(2) 도매시장 등의 개설

제1절(도매시장 등의 개설)과 관련하여 현행법령과 개정(안)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개정(안)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개설근거 및 개설요건 업무규정/운영관리계획서 작성·승인, 변경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 도매시장의 폐쇄
제18조(개설구역)	제20조	조문순서
제19조(허가기준 등)	제17조 제19조	도매시장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
제43조 (공판장의 개설)	제23조	조문순서
제47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	제22조	조문순서
제67조 제2항(시설기준)	제24조	조문순서

먼저, 현행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및 제19조(허가기준 등)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4개 조항으로 나누어 그 각각에 대해 제17조에서는 개설근거 및 개설요건을 제18조에서는 업무규정/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승인, 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제19조에서는 특별히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을

제21조에서는 도매시장의 폐쇄와 관련한 사항을 나누어 배치하였다.

조제목은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제18조(업무규정의 작성 등), 제19조(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 제21조(도매시장의 폐쇄)로 규정하였다.

< 현 행 >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部類)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12.2.22.>

③ 시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려면 그 3개월 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허가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농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2.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을 갖추어 줄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설하여야 한다.

현행 제17조와 제19조에서 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개정(안)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개설근거 및 개설요건 업무규정/운영관리계획서 작성·승인, 변경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 도매시장의 폐쇄
제19조(허가기준 등)	제17조 제19조	도매시장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

위에서 기술된 현행 조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에서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 지방도매시장의 개설, 지방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업무규정의 승인·변경, 도매시장의 폐쇄와 관련한 사항을 한 조문에 모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동일하고,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만 차이가 있는데 개설자를 나누어 규정함에 따라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크게 차이가 있을 것 같은 혼동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조문상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리하였는데, 제17조에서는 “도매시장의 개설”이라고 하여, 제1항에서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설하여야 한다.”고 하여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에 공통되는 사항을 묶어서 “도매시장의 개설”로 규정하였다. 현행 제19조(허가기준 등)에서 규정되었던 개설요건과 관련한 사항은 도매시장 일반에 적용되는 개설요건이라는

점에서 제17조에서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다.

제18조(업무규정의 작성 등)에서는 도매시장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제1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특별히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업무규정 작성 및 변경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였다. 현행 제17조에서는 개설과 업무규정작성에 관한 사항이 모두 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개정안에서는 이를 나누어 규정하였다.

제19조(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은 제17조에 따라 개설하는 도매시장과 달리 도지사의 허가를 요하므로 이를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하였다.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은 업무규정 작성 및 변경에 도지사의 승인을 요함을 규정하였고 개설 근거 및 요건 등은 현행법에서는 도지사의 허가 기준에 이를 규정하고 도매시장일반에 이를 준용하도록 하였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일반요건(개정안 제17조제2안)으로 이를 먼저 규정하고,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허가 요건에서 이를 준용하도록(제19조제5항) 하였다.

이하 개정안의 조문 배열순서대로 설명하면, 제20조에서는 현행의 제18조에서 규정하던 “개설구역”에 관한 내용을 이동하였고, 제21조(도매시장의 폐쇄)에서는 현행 제17조에 있던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항으로 구성하였다.

제22조에서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과 관련된 사항을 제23조에서는 공판장의 개설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어 제24조(시설기준)은, “도매시장·민영도매시장 및 공판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부류별로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현행 제67조

(유통시설의 개선 등)제2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이동하여 본절에 배치하였다. 해당 내용은 도매시장의 시설기준과 관련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현행의 조문 위치보다는 도매시장의 개설과 관련한 본 절에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현 행
제17조	도매시장의 개설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제19조(허가기준 등)
제18조	업무규정의 작성 등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제19조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제19조(허가기준 등)
제20조	도매시장의 개설구역	제18조(개설구역)
제21조	도매시장의 폐쇄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제22조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제47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
제23조	공판장의 개설	제43조(공판장의 개설)
제24조	시설기준	제67조 제2항(시설기준)

구체적으로 “제1절 도매시장 등의 개설 등”의 개별 조문의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제1절 도매시장 등의 개설 등</p> <p>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①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部類)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다.</p> <p>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농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2. 제24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p>제18조(업무규정의 작성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7조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p>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 ① 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지방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가 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제17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시설을 갖추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제20조(도매시장의 개설구역) ①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지역에서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일정 구역을 그 중앙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구역으로서 그 지방도매시장이 속한 도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지사가 그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도매시장의 폐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려면 그 3개월 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 ① 민간인등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민간인등이 제1항에 따라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p>2. 민영도매시장의 시설이 제24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p> <p>3.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p> <p>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p> <p>제23조(공판장의 개설) ①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제2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개설한 공판장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개설한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9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p> <p>제24조(시설기준) 도매시장·민영도매시장 및 공판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부류별로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

(3) 도매시장 등의 관리·운영 등

제3장 제2절의 도매시장 등의 관리·운영에서는 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공판장, 도매시장법인, 공공출자법인,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시장도매인 순으로 조문을 배치하여 각각의 유통주체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을 배치하였다.

제2절(도매시장 등의 관리·운영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령과 개정(안)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개정(안)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제25조	도매시장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제26조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27조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제28조	
제78조(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제29조	
제78조의2(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30조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31조	
제42조의3(과밀부담금의 면제)	제32조	
제48조(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제33조	민영도매시장
제44조(공판장의 거래관계자)	제34조	공판장
제45조(공판장의 운영 등)	제35조	
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36조	도매시장공판장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37조	도매시장법인
제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제38조	
제66조(도매시장법인의 대행)	제39조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제40조	
제24조(공공출자법인)	제41조	공공출자법인
제27조(경매사의 임면)	제42조	경매사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제43조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제44조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45조	중도매인
제25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제46조	
제26조(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제47조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제48조	매매참가인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제49조	시장도매인
제36조의2(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제50조	
제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	제51조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절에서는 도매시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서두에 배치하였다.

제25조에서는 현행 제20조(도매시장개설자의 의무)를, 이어 제26조에서는 현행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를 배치하였다. 제27조에는 현행 제74조에 있던 거래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을 이어 배치하였다. 현행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는 제1항에서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금지의무 및 도매시장개설자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및 제3항은 일반 감독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행 제74조의 내용을 이동하여 도매시장 거래질서의 유지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이어 제28조에서는 현행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29조 및 제30조에서는 현행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규정되어 있던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배치하였다. 도매시장 일반의 관

리·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에 이어 제31조에서는 현행 제4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제32조에서는 현행 제4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밀부담금의 면제와 관련한 사항을 배치하였다. 도매시장 일반, 이어 지방도매시장 특례 규정을 배치한 후, 현행 제48조의 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의 내용을 제33조로 배치하였다.

현행	개정(안)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제25조	도매시장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제26조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27조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제28조	
제78조(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제29조	
제78조의2(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30조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31조	
제42조의3(과밀부담금의 면제)	제32조	
제48조(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제33조	민영도매시장

구체적으로 도매시장의 관리·운영 등과 관련한 개별 조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조문의 경우, 제1절의 경우처럼 조문 내용의 변경을 많지 않고 조문의 배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p>제2절 도매시장 등의 관리·운영 등</p> <p>제25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鮮度) 유지의 촉진 <p>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26조(도매시장의 관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41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시</p>

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거래질서의 유지) ①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8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제29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매매·수의매매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p>③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규모 및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4조(수탁판매의 원칙)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32조(과밀부담금의 면제)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p> <p>제33조(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①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②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③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민영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민영도매시장의 경매사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4조를 준용한다.</p> <p>⑤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영업 등에 관하여는 제4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1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p> <p>⑥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민영도매시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민영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

두 번째,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에 이어 공판장에 관한 사항을 제34조에서 제36조로 배치하였다.

현 행	개정(안)	
제44조(공판장의 거래관계자)	제34조	공판장
제45조(공판장의 운영 등)	제35조	
제4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36조	도매시장공판장

공판장과 관련한 내용은 현행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 배치되어 있던 조문을 이동하여 본 절로 구성하였다. 공판장의 거래관계자, 공판장의 운영 등,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의 순서로 배치하여 현행의 조문배치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해당 개별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절 도매시장 등의 관리·운영 등
<p>제34조(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①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p> <p>②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③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4조를 준용한다.</p> <p>제35조(공판장의 운영 등)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1항, 제62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공판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이를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공판장의 경우에는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제36조(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이하“도매시장공판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2항, 제54조제1항, 제55조부터 제64조까지를 준용한다.</p> <p>②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에 관하여는 제45조, 제5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62조 및 제83조를 준용한다.</p> <p>③ 도매시장공판장의 산지유통인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p> <p>④ 도매시장공판장의 경매사에 관하여는 제42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p> <p>⑤ 도매시장공판장은 제74조에 따른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流通子會社)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세 번째, 도매시장의 관리·운영, 공판장에 관한 사항에 이어 도매시장법인 및 공공출자법인에 관한 사항을 제37조에서 제41조로 배치하였다.

현 행	개정(안)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제37조	도매시장법인
제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제38조	
제66조(도매시장법인의 대행)	제39조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제40조	
제24조(공공출자법인)	제41조	공공출자법인

현행법에서 도매시장법인에 관련한 규정은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한군데로 모아서 배치하였다. 먼저 제37조로 현행 제23조의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제38조로 현행 제23조의2의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과 관련한 사항을 배치하였다. 이어 제39조에 현행 제66조에서 규정하던 도매시장법인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두고, 제40조에서 현행 제35조의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배치하였다. 이어 제41조에서는 도매시장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법인인 공공출자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배치하여 전반적인 내용이 흐름에 따라 구성되도록 하였다.

해당 개별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p>제2절 도매시장 등의 관리·운영 등</p> <p>제3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p> <p>②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仲都賣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이하 “인수”라 한다)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p>
--

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제98조(허가취소 등)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것
- ④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⑤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임원이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⑥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①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인수 또는 합병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인수 또는 합병의 당사자인 도매시장법인이 제37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합병을 승인하는 경우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도매시장법인의 대행)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관리공사 또는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처리기준과 그 밖에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제40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

<p>래 방식으로 하는 경우</p> <p>2.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저장 중인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승인한 경우</p> <p>③ 제2항에 따른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④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제빙(製氷)·보관·후숙(後熟)·저장·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p> <p>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產地)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p> <p>제41조(공공출자법인)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을 갈음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법인(이하 “공공출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 공공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출자액의 합계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 2. 관리공사 3. 농림수협등 4.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도매시장으로 이전되는 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상인과 그 상인단체 5. 도매시장법인 6.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③ 공공출자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p> <p>④ 공공출자법인은 「상법」 제317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한 날에 제42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p>
--

제3장 제2절의 네 번째 내용으로 경매사에 관한 내용을 제42조에서 제44조에 배치하였다. 경매사와 관련한 사항은 조문 내용의 변경 없이 재배치하여 구성하였다.

현 행	개정(안)	
제27조(경매사의 임면)	제42조	경매사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제43조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제44조	

해당 개별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p>제2절 도매시장 등의 관리·운영 등</p> <p>제42조(경매사의 임면)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p> <p>②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5. 제98조(허가취소 등)제4항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98조(허가취소 등)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p>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p> <p>④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任免)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p> <p>제43조(경매사 자격시험) ①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한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p>
--

(제2항에 따른 시험의 정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방법, 자격증 발급, 시험 응시 수수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경매사의 업무 등) ①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②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제2절의 마지막 내용으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시장도매인의 순서로 유통참가자에 관한 사항을 배치하였다. 제45조에서 제47조에는 현행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25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제26조(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를 배치하고 이어 제48조에 현행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조문을 배치하였다. 이어 제49조에서 제51조에서는 현행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제36조의2(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제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의 규정을 배치하였다.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시장도매인과 관련한 사항은 제정 이후의 변화된 현실 등의 반영으로 신설된 사항들이 많아 가지조항이 많고, 조문의 위치도 일관성이 없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제3장 제2절로 재배치하였다.

해당 개별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절 도매시장 등의 관리·운영 등

제4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98조(허가취소 등)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제4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 ④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제3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⑤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를 빌려 주는 행위
 - ⑥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제46조(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 제47조(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공판장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 제48조(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민영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49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p>하는 사람이 없을 것</p> <p>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p> <p>4. 임원 중 제98조(허가취소 등)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p> <p>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p> <p>③ 시장도매인은 해당 임원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p> <p>④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0조(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p> <p>제51조(시장도매인의 영업)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p> <p>②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p>

(4) 매매·거래 등

제3장 제3절 매매·거래 등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거래기반 및 안정성 확보, 기타 거래, 전자거래 등으로 구분하고, 매매 및 거래와 관련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문을 재배치하였다. 출하자신고와 산지유통인의 등록은 매매 및 거래의 직전단계로 파악하여 이를 계약체결 이전 단계로 배치하였다.

현 행	개정(안)	
제30조(출하자신고)	제52조	출하자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제53조	산지유통인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54조	계약체결
제32조(매매방법)	제55조	(매매·거래의 방법 등)

제33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제56조	
제34조(거래의 특례)	제57조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제58조	
제39조(매매 농수산물물의 인수 등)	제59조	계약이행 (인수, 결제, 정산, 수수료)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제60조	
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제61조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62조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63조	거래기반 및 안전성 확보
제40조(하역업무)	제64조	
제38조의2(출하농수산물물의 안전성 검사)	제65조	
제49조(산지판매제도의 확립)	제66조	기타 거래 (산지판매, 포전매 매)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제67조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제68조	전자거래
제70조의3(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 치)	제69조	

현행법에서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이 제29조에 출하자신고가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출하자신고를 제52조로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제53조로 하여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였다. 농산물을 수집하여 출하하는 산지유통인 이전에,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행위가 시간적으로 더 앞선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양조문의 순서를 변경하여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출하자 신고를 앞에 두고, 산지유통인 등록을 뒤로 배치하였다.

현 행	개정(안)	
제30조(출하자신고)	제52조	출하자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제53조	산지유통인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농산물 출하단계에 있는 유통 참가인에 관한 규정으로, 해당 개별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절 매매·거래 등

제52조(출하자 신고) 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및 경매의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53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제51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주어야 한다.
- ④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산물 출하 이후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매매 및 거래의 방법에 관한 규정들을 제54조에서 제58조까지 배치하였다.

현 행	개정(안)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54조	계약체결 (매매·거래의 방법 등)
제32조(매매방법)	제55조	
제33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제56조	
제34조(거래의 특례)	제57조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제58조	

제54조에서는 수탁판매의 원칙을, 제55조에서는 매매방법으로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을 정하고, 제56조에서는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배치하고, 제57조에서는 거래의 특례를, 제58조에서는 수탁의 거부금지 등의 규정을 배치하였다.

해당 개별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p>제3절 매매·거래 등</p> <p>제54조(수탁판매의 원칙) ①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p> <p>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중도매인의 거래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제58조, 제59조, 제60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62조제1항제1호·제3호, 제64조제2항·제4항 및 제97조(명령)를 준용한다.</p> <p>④ 중도매인이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거래액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다.</p> <p>⑥ 제5항에 따른 중도매인 간 거래액은 제45조제3항제6호의 최저거래금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p> <p>⑦ 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중도매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래 내역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5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가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p> <p>제56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가가 서면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p>
--

<p>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량 입하품, 표준규격품, 예약 출하품 등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電子式)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수수지식(舉手手指式), 기록식, 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매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품목별·도매시장별로 경매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57조(거래의 특례) 도매시장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p> <p>제5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제52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제65조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9조에서 제62조까지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인수, 결제, 정산, 수수료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배치하였다.

현행	개정(안)	
제39조(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제59조	계약이행 (인수, 결제, 정산, 수수료)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제60조	
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제61조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62조	

계약이행 단계는 현행 제39조에서 제42조에 규정되었던 내용으로 개정안에서는 제59조(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제60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제61조(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제6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으로 배치

하였다.

해당 개별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p>제3절 매매·거래 등</p> <p>제59조(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한다.</p> <p>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농수산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그 매수인의 부담으로 해당 농수산물을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여 다시 매매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경우 차손금(差損金)이 생겼을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이 부담한다.</p> <p>제60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과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 따른 대금결제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표준송품장(標準送品狀)과 판매원표(販賣元標)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하여, 출하자가 이를 별도의 정산 창구(窓口)(제61조에 따른 대금정산조직을 포함한다)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표준송품장, 판매원표, 표준정산서, 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제61조(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대금의 정산을 위한 조합, 회사 등(이하 “대금정산조직”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출하대금2.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간의 농수산물 거래에 따른 판매대금 <p>제6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2.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3.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

-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 5.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이 대금정산조직에 납부하는 정산수수료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기반 및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현행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40조(하역업무), 제38조의2(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관련한 사항을 개정안 제63조에서 제65조에 배치하였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63조	거래기반 및 안전성 확보
제40조(하역업무)	제64조	
제38조의2(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제65조	

해당 개별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절 매매·거래 등
- 제63조(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64조(하역업무)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와 제2항에 따른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 전문

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5조(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 중 시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 소속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뒷부분에는 도매시장 내에서의 거래외의 산지매매, 포전매매, 그리고 전자거래에 관한 내용을 배치하였다.

현행	개정(안)	
제49조(산지판매제도의 확립)	제66조	기타 거래 (산지판매, 포전매매)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제67조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제68조	전자거래
제70조의3(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9조	

현행 제49조에 규정된 산지판매제도의 확립, 제50조에 규정된 포전매매의 계약,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에 규정된 전자거래 관련 사항들은 개정안 제66조에서 제69조에 배치하였다.

해당 개별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절 매매·거래 등

제66조(산지판매제도의 확립) ①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생산지에서 출하되는 주요 품목의 농수산물에 대하여 산지경매제를 실시하거나 계통출하(系統出荷)를 확대하는 등 생산자 보호를 위한 판매대책 및 선별·포장·저장 시설의 확충 등 산지 유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제61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창고경매, 포전경매(圃田競賣) 또는 선상경매(船上競賣) 등을 할 수 있다.

제67조(포전매매의 계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농산물을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이 지나기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전매매의 계약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68조(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수산물 거래와 관련된 업무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농수산물 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
2. 농수산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심사 및 관리
3. 제69조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관리
5.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관에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위원의 제척(除斥)·기피·회피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타 농수산물 유통기구 등

제3장 제4절에서는 도매시장, 공판장 외의 유통기구인 농수산물집하장,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종합유통센터, 유통자회사를 별도의 절로 규정하였다.

현 행	개정(안)	
제5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제70조	집하장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71조	산지유통센터
제52조(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제72조	유통시설 편의제공
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제73조	종합유통센터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제74조	유통자회사

해당 개별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절 기타 농수산물 유통기구 등

제7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①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을 대량 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집하장의 효과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출하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입지 선정과 도로망의 개설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제1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24조에 따른 공판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농수산물 유통시설의 편의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이용 요청을 받으면 해당 시설의 이용, 면적 배정 등에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3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유통자회사의 설립) ① 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 농수산물 유통정책

농수산물 유통 관련 정책수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제4장에 배치하였다. 해당 조문들은 현행의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에 있던 내용으로 개정안에서는 제4장 농수산물 유통정책으로 조문의 위치를 이전하였다. 현행법 제6장에 속해있던 내용 중 제66조(도매시장법인의

대행)은 제3장제2절로, 제67조제2항은 제3장제1절로, 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은 제3장제4절로,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및 제70조의3(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는 제3장제3절로 조문을 이동하였다. 이후 남은 조문은 제75조에서 제85조까지 배치하여 농수산물 유통 관련 정책수단으로 묶어서 정리하였다.

현 행	개정(안)	
제62조(정비 기본방침 등)	제75조	기본방침 지역별 정비 유사도매시장 정비
제63조(지역별 정비계획)	제76조	
제64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제77조	
제65조(시장의 개설·정비 명령)	제78조	시장·시설의 정비·개선 등
제67조제1항(유통시설의 개선 등)	제79조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제80조	소매유통 및 유통효율 향 상을 위한 정책추진
제72조(유통 정보화의 촉진)	제81조	
제73조(재정지원)	제82조	유통기구/유통구조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제75조(교육훈련 등)	제83조	
제76조(실태조사)	제84조	
제77조(평가실시)	제85조	

먼저, 농수산물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 지역별 정비계획, 유사도매시장과 관련한 사항을 제4장의 서두에 배치하였다. 정비 기본방침 수립, 지역별 정비계획 수립 등의 사항은 법률의 총칙 직후에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나, 본 개정안에서는 유통정책으로 정리하여 정책의 서두로 배치하였다.

현 행	개정(안)	
제62조(정비 기본방침 등)	제75조	기본방침 지역별 정비 유사도매시장 정비
제63조(지역별 정비계획)	제76조	

제64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제77조	
-------------------	------	--

해당 개별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장 농수산물 유통정책
<p>제75조(정비 기본방침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수산물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물량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도매시장·민영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민영도매시장 및 공판장 시설의 바꿈 및 이전에 관한 사항 3.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奉仕) 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 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 5.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 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6. 소매상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p>제76조(지역별 정비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지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정비계획의 내용이 기본방침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정의 변경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승인할 수 있다.</p> <p>제77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①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유사(類似)한 형태의 시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유사 도매시장구역을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의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 개선, 시설 개선, 이전대책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 도매시장구역에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그 구역의 농수산물도매업자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정책수립 및 정비 등의 내용에 이어 시장 및 시설의 정비·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배치하고, 소매유통 및 유통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과 관련한 조문을 배치하였다.

현 행	개정(안)	
제65조(시장의 개설·정비 명령)	제78조	시장·시설의 정비·개선 등
제67조제1항(유통시설의 개선 등)	제79조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제80조	소매유통 및 유통효율 향 상을 위한 정책추진
제72조(유통 정보화의 촉진)	제81조	

해당 개별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장 농수산물 유통정책
<p>제78조(시장의 개설·정비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방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에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개설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나 농림수협 등 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개설하거나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손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p> <p>제79조(유통시설의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민영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판매·수송·보관·저장 시설의 개선 및 정비를 명할 수 있다.</p> <p>제80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농수산물 소매단계의 합리적 유통 개선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중도매업·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p>

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소매업자 등이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과 공동이익의 증진 등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이용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1조(유통 정보화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처리 및 전파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효율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반의 정비,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유통정책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현행 제73조(재정지원), 제75조(교육훈련 등), 제76조(실태조사), 제77조(평가실시)의 내용을 개정안 제82조에서 제85조에 배치하였다.

현 행	개정(안)	
제73조(재정지원)	제82조	유통기구/유통구조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제75조(교육훈련 등)	제83조	
제76조(실태조사)	제84조	
제77조(평가실시)	제85조	

해당 개별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장 농수산물 유통정책

제82조(재정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용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3조(교육훈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4조(실태조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으로 하여금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평가의 실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관리와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시장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1.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2. 부진한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 권고
3.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 명령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관련하여, 해당 조문내용은 현행을 유지하되, 조문 위치 및 번호만 변경하였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현행에서는 제5장 제54조(기금의 설치)에서 제61조(결산보고) 9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제5장 제86조(기금의 설치)에서 제94조(결산보고) 9개 조문으로 조문 번호를 이동하였다.

해당 개별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제86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87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제9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제8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국가회계원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삭제 <2004.12.31.>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중자원장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용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 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제7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56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거래대금정산·운영 및 시설설치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 지원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④ 기금을 용자받거나 대출받은 자는 용자 또는 대출을 할 때에 지정한 목적 외의 목

적에 그 용자금 또는 대출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90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8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 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기금의 손비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기면 이를 기금에서 손비(損費)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13조 및 「중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결손금
2. 차입금의 이자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9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용자 또는 대출의 목적, 대상자, 금리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의 용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자금의 용자 등 자금의 사용 목적상 1년 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 국채·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제94조(결산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보 칙

현행 제7장에 위치했던 보칙 역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조문번호만

이동하였다. 현행 제79조(보고)에서 제85조(권한의 위임 등)에 위치했던 내용은 제6장 제95조(보고)에서 제101조(권한의 위임 등)로 이동하였다.

해당 개별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장 보 칙
<p>제95조(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②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기장사항(記帳事項),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제96조(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과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p> <p>제97조(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에서 용자 또는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98조(허가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지방도매시장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민영도매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시설을 폐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나 승인 없이 지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였거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2. 제19조제2항,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지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운영한 경우 3. 제64조제3항 또는 제9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축산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였을 때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였을 때
4. 제37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하였을 때
6.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였을 때
8.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하였을 때
9. 삭제 <2014.3.24.>
10.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하였을 때
11. 제57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12. 제40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였을 때
13. 제63조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하였을 때
14. 제49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때
16.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하였을 때
17. 제5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였을 때
18. 제64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9.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하였을 때
20. 제60조제2항에 따른 대금결제 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21. 제62조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2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6조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24. 제97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5. 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③ 제85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도

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경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2.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경우
3.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45조 및 제3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5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45조 제5항제1호(제3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였을 때
 - 2의2. 제45조 제5항제2호(제3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었을 때
 3. 제5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였을 때
 4. 제53조 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하였을 때
 5. 제54조 제2항(제3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6. 제54조 제3항(제3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6의2. 제54조 제5항(제3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7. 제62조(제36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
 8.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9. 제96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하였을 때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⑦ 도매시장 개설자가 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9조(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

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제98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중도매인이 제98조제5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 등에는 1억원 이하, 중도매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4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9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제100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취소 또는 승인취소
2. 제98조제5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취소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취소

제101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3조(제3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제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제95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에 대한 보고명령

(9) 별 칙

현행 제8장의 별칙 역시, 내용은 현행을 유지하고 조문번호만 이동하여 5개 조문 제102조(별칙)부터 제106조(과태료)로 구성하였다.

해당 개별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장 벌 칙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서 **제19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지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한 자
3. **제45조**제1항(**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4. **제53조**제1항(**제3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
5.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자
6.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 자
8. **제9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業)을 계속한 자

제103조(벌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2.2.22.>
2. **제38조**제1항(**제46조**,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수·합병을 한 자
3. **제45조**제5항제1호(**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 3의2. **제45조**제5항제2호(**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준 자
4.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명한 자
5. **제53조**제2항(**제3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
6. **제53조**제4항(**제3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자
7.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거짓으로 위탁받은 자 또는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의2. 제54조제5항(제3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

8.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거래한 자

9.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자

10. 제62조제1항(제54조제3항, 제35조 본문, 제36조제1항·제2항, 제33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

11. 제73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10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2. 제67조제3항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수인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속을 기피한 자

3.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3조제5항(제3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65조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3의2.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전매매의 계약을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한 매도인

4. 제27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은 제외한다)

5. 제95조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6. 제9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2. 제2안

제2안은 제1안의 내용 중 농산물 산지유통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묶어 도매시장 등의 개설 등에 관한 장과 구분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제1안에서 별도의 장(章)을 구분하므로, 총 8장으로 구성하게 된다.

제1안	제2안
제1장 총칙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 제3장 도매시장 등의 개설 및 관리·운영 등 제1절 도매시장 등의 개설 제2절 도매시장 등의 관리·운영 등 제3절 매매·거래 등 제4절 기타 농수산물 유통기구 등 제4장 농수산물 유통정책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 <u>제3장 산지유통 등</u> 제4장 도매시장 등의 개설 및 관리·운영 등 제1절 도매시장 등의 개설 제2절 도매시장 등의 관리·운영 등 제3절 매매·거래 등 제5장 농수산물 유통정책 제6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제2안에서는 제3장 산지유통 등을 산지유통과 관련한 6개의 조문을 하나의 장으로 편성하였다.

현 행	개정(안)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제17조	산지유통인 등록
제30조(출하자신고)	제18조	출하자 신고
제49조(산지판매제도의 확립)	제19조	산지판매제도의 확립
제5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제20조	농수산물집하장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21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	제22조	포전매매의 계약

3. 제3안

제3안은 현재의 법체계에서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에 관한 부분과 가격안정 등 정책에 관한 부분(기금 포함)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방안이다.

유통에 관한 부분은 도매시장법(가칭)으로 칭하고, 제1안과 제2안에서의 체계를 가지고 와서 선택하는 방안이다.

※ 도매시장법(가칭) 제1안

제1장 총칙
제2장 도매시장 등의 개설
제3장 도매시장 등의 관리·운영 등
제4장 매매·거래 등
제5장 기타 농수산물 유통기구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 도매시장법(가칭) 제2안

제1장 총칙
제2장 산지유통 등
제3장 도매시장 등의 개설
제4장 도매시장 등의 관리·운영 등
제5장 매매·거래 등
제6장 기타 농수산물 유통기구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가격안정 등 정책에 관한 부분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가칭)로, 농수산물 유통정책, 농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보칙, 벌칙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가칭)의 체계

제1장 총칙
제2장 농수산물 유통정책
제3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
제4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참고로 국내 다른 법령의 분법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원자력법 분법 사례

법 률 명	주 요 내 용	비 고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	원자력법 분법제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	

- 소방법 분법사례

법률명	주요내용	비고
소방기본법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소방법 분법제정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	
소방시설공사법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관세법 분법 연구²⁵⁾
- 산림법 분법 사례²⁶⁾
- 문화재 보호법 분법 사례²⁷⁾
- 지방세법 분법사례

법률명	주요내용	비고
지방세기본법	기존 지방세법 제1장(총칙)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분리, 기존에 국세기본법 등을 준용하고 있던 통칙적 사항을 직접 규정	지방세법 분법제정
지방세법	기존 지방세법의 제1장(총칙)과 제	

25) 이세정 외(한국법제연구원), 관세법 분법 연구, 관세청, 2013.
 26) 2개 법률로 분법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 3개 법률로 분법화(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 률 명	주 요 내 용	비 고
	5장(과세면제 및 경감)을 삭제하고 제2장~제4장의 세목분야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요건에 대한 통합법으로 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지방세법의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부분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분리·독립 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왔던 감면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고 감면내역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세 감면 규정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	

- 기타(환경보전법²⁸), 교육법²⁹,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³⁰)

28) 7개 법률로 분법화(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29) 3개 법률로 분법화(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30) 2개 법률로 분법화(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 5 장 농산물 유통관련 기타 제도개선 방안

제 1 절 도매시장 구분관리의 실효성 제고

1. 도매시장 구분의 실효성 제고

도매시장은 법령상 개설자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매시장은 1993년 6월 11일 개정법률(법률 제4554호)을 통해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하기 시작했고, 2000년 1월 28일 전부개정법률(법률 제6223호)을 통해서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입된 바 있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입되면서 이에 대비하여 기존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주체이면서 동시에 개설자인 경우를 공영도매시장이라 부르고 있지만, 법에서 공영도매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민간의 투자로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자가 되어 있는 경우를 일반법정 도매시장이라 부르고 있으나, 이 또한 법령상의 구분 기준은 아니다.

한편, 현행법은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현재의 도매시장 제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항에서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규율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항삭제와 개정, 추가 등이 반복됨에 따라 각각의 규정내용을 파악하기가 난해한 측면이 있다. 또한 민영도매시장의 경우도 개설자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은 중앙·지방 도매시장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장에서 규율하는 등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개설자에서 차이를 보일 뿐, 상당부분의 제도적 규율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면, 다른 도매시장 규율과 동일선상에서 규율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 따라 구분되는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에 적용 내지는 준

용되는 규율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 보면 알 수 있듯,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법적 규율 내용은 실제에 있어서는 업무규정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권한여부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구분	조문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공판장
개설자	§17, §47, §43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민간	생산자단체 공익법인
개설허가	§17, §47, §43	불요	개설자가 시인 경우 도지사의 허가	시·도지사 허가	시·도지사 승인
업무규정(변경) 승인	§17, §47, §43	농림부장관 해수부장관 승인	개설자가 시인 경우 도지사 승인	시·도지사 승인	해당없음
폐쇄	§17 §82	3월 전 공고	3개월 전 공고 개설자가 시인 경우 3개월 전에 도지사의 허가	허가취소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 가능	
허가·승인 취소 등	§82	해당없음	개설자가 시인 경우: ·도지사 허가없이 개설 ·도지사승인 없이 업무규정 작성, 변경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운영 ·하역업무(§40)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 ·제81조제1항에 따른 명령 위반	·시·도지사 허가 없이 개설 ·시·도지사 승인 없이 업무 규정 작성, 변경 ·제출된 업무 규정 운영관리 계획서와 다르 게 운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명령 위반	·승인조건 위 반시 승인취소 ·운영실적이 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 이하 로 부진한 경 우 승인취소
벌칙	§86	해당없음	도지사 허가없이 개	시·도지사 허	시·도지사 승

			설한 경우	가없이 개설한 경우	인없이 개설한 경우
--	--	--	-------	------------	------------

중앙도매시장은 물량공급의 광역화로 유통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도매거래의 중앙시장으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고, 물량의 규모 뿐만 아니라 거래가격 형성기능을 강조하는 시장이다. 동일한 개설구역 내에 복수의 도매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제도를 운영할 경우 중앙도매시장 중심의 정책추진의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고, 이를 주도로 하여 엄격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대표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도매시장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간의 역할과 기능의 차별성 및 시장 구분의 실익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동일 관할구역 내에 2개의 시장이 존재할 경우, 대표가격을 형성하여 주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장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거래규모, 거래방식 등 획일적인 도매시장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도리어 지방도매시장의 상거래 기능의 위축우려도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도소매 기능의 미분화로 인하여 다수의 도매시장에서 도·소매업이 병존하여 도매시장 중심의 시장거래체계 확립에 어려움이 따른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 구분에 따라 도매시장에 대한 제도적·기능적으로 차별화된 정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엄격한 규제를 하되 그에 따른 지위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부여(규제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중앙과 지방 도매시장의 차별화

법률에서 명확하게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역할과 규제내용을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구분의 실익을 높일 필요가 있다. 중앙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공정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그와 더불어 시설 투자 등을 통한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도매시장의 물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다른 유통경로와의 경쟁촉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도매시장에 대한 규제완화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제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앙도매시장과는 여건이 다른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 상당히 유사한 관리기준에 따라 규율하고 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아래에서 지방도매시장의 경쟁력 약화로 거래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지방도매시장은 유통경로상의 경쟁력 부족으로 인하여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에 한계를 보이고, 지방도매시장의 공간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따라서 지방도매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자치적인 관리가 가능한 규제체계로의 변모가 요청된다. 예컨대, 자치단체의 정책판단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을 권역별 물류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유통시설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고려 가능하며, 이에 따른 법제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별과 관련하여 도매시장에 대한 자율영역 확대의 필요성도 고려할 수 있다. 종래,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핵심은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위하여 주로 다양한 유통경로의 확보(경쟁)와 거래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가 주를 이루었으나, 향후에는 이에 더하여 유통과정에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효율성 추구도 고려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예컨대 업무규정 승인과 관련해서도,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업무규정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지방도매시장(시가 개설자인 경우)의 개설자는 업무규정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업무규정변경의 경우에도 동일). 업무규정의 모든 내용에 관하여 중앙 정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자칫 해당 도매시장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설자의 자율적인 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중앙정부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핵심적인 중요사항의 예로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중도매업 허가, 시장도매인 지정, 매매방법,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지정 · 허가제도의 보완

1. 도매시장법인 지정 · 중도매인 허가 · 시장도매인 지정제도의 보완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농산물유통법 제23조제1항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도매업 허가에 관하여도, 농산물유통법 제25조제1항은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시장도매인 지정에 관해서도 농산물유통법 제36조제1항은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체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은, 지정이나 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재허가·갱신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법령에 따르면 허가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존의 도매시장법인등은 신규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으로는 동일한 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속하여 허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미리 신규허가 등을 신청받아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신규허가 등을 함으로써 사실상 갱신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의미의 “갱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종래의 범위반사항에 따른 제재조치승계 등의 문제에 있어 제도적 한계를 노출한 바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중도매업·시장도매인에 대한 지정·허가의 갱신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허가의 갱신”은 기존허가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것이지 그것과 무관한 새로운 행위는 아니다. 즉, 허가의 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며,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의 범위반 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조문의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도매시장법인 지정

<p>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p> <p>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p> <p>② ~ ⑥ (생략)</p>	<p>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p> <p>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	---

- 시장도매인 지정

<p>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p> <p>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p> <p>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

2. 허가·갱신 관련 입법례

허가·갱신과 관련하여 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비업법」 제4조에서는 경비업 허가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동법 제6조에서는 허가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법에 따른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는데,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허가유효기간 및 갱신 등>

「경비업법」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약사법」 제31조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이하 “품목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31조의5에서는 이러한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는데,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허가를 갱신받거나 품목신고를 갱신하도록 하였다.

<의약품 품목허가, 품목신고의 갱신>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① 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이하 “품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 ① (생략)

「약사법」 제31조의5(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①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료의약품
2.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수출용 의약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에 따른 제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의 유효기간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제심사 기간이 끝난 후부터 적용한다. ③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허가를 갱신받거나 품목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갱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제조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갱신받거나 품목신고를 갱신할 수 없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되지 못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는 조직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14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받은 조직은행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허가의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직은행이 허가 갱신 이전 3년 간 조직 처리 또는 수입 실적이 없으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그 허가의 갱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가유효기간 및 갱신 등>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직은행의 허가 등) ① 조직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4조(조직은행의 허가갱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허가받은 조직은행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허가의 갱신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은행이 허가 갱신 이전 3년간 조직 처리 또는 수입 실적이 없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허가의 갱신을 제한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갱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10조에서는 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하고,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허가유효기간 및 갱신 등>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허가의 유효기간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의 만료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당해 갱신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한다. ④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3 절 지정 · 허가 요건의 보완

도매시장법인 지정 · 중도매인 허가 · 시장도매인 지정 요건을 살펴보면 지정 등의 유효기간 중의 범위반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청된다. 특히 농수산물유통법 제82조에 규정된 업무정지 · 취소 등에 해당하는 범위반사유 및 업무규정의 상습 ·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앞서 언급한 갱신제도와 연계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ex. 행정처분별 별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도매시장법인 지정요건(제23조)

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것
- ④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된 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⑤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임원이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중도매업 허가요건(제25조)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 시장도매인 지정요건(제36조)

② 제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것

○ 유사입법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④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21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2. 1대의 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3.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제 4 절 행정처분 관련 제도 보완

1. 행정처분 차수기준 강화(1년→2년)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별표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차수기준 경과로 인하여 1차 처분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 미흡 문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수산물유통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행정처분 사유 신설

농수산물유통법 제88조(벌칙)에서는 거짓으로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기준에서는 규정 흠결되어 있다. 예컨대, 도매시장법인이 허위 출하자를 내세워 중도매인 수집물량을 기록상장 처리하거나 특정인 지원을 위해 허위로 실적을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기록상장 및 허위거래의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필요하다.

3.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등

농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별표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서는, 무실적자에 대한 기준으로 1개월 무실적, 2개월 무실적, 3개월 무실적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연속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실무상 혼란 발생하므로, 규정의 의미를 명확화한다는 차원에서 ‘연속’ 무실적으로 개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역시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계절상품의 경우에는 3개월 평균거래실적 요건이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6개월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가 있다.

제 5 절 기 타

1. 청과시장의 저온창고 관련

청과(과실·채소) 시장의 저온창고는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시설로 청과시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농민이나 중개업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저온 창고가 청과시장의 필

수시설이 아닌 부수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농민이나 중개업자 등이 저온 창고를 이용함에 있어서 높은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온창고를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 청과시장이 필수시설로 지정하여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온창고 유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농민이나 중개업자 등이 지나치게 높은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등이 보유하여야 하는 부류별 시설 기준을 규정할 때에, 청과시장의 경우 저온창고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온창고 유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주산지 지정 관련

현행법에 따를 경우,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함)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법개정으로 주산지 지정권한이 시·도지사로 이관된 이후 주산지 지정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산지 지정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는, 주산지 지원을 의무로 규정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용도에 주산지 지원을 추가하여 주산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주산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책을 법에 명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는, 주산지 지정 실효성이 저조한 이유를 주산지의 인정범위가 좁아 한계가 있고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반영의 통로가 없는 점에서 찾는 것으로, 주산지의 지정 목적에 경쟁력 제고를 추가하고 주산지 지정대상 품목의 기준을 완화하며, 시·도별 주산지협의체 및 중앙주산지협의회 등을 설치하여 지정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 6 장 결 론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유통·수급·도매시장·기금·가격안정·그 밖에 다양한 유통기구 등에 관한 내용들이 하나의 법률에서 합리적인 기준 없이 혼재되어 있어 그 체계가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과 관련한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유형화하고 정리하여 법령 체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유통 상황의 변화나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에 있어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적인 법률 체계의 정합성, 내용상 연관성을 고려한 조문배치, 수급 및 유통의 체계적 제도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통하여 법령체계 개편안을 도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령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한 채 농산물 유통의 실체를 고려한 장·절 및 조문의 순서를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농산물 유통에 관한 부분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체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입법실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법률에서 가격안정이라고 하는 고도의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과 유통주체나 유통과정에 대한 규제가 함께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입법적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종래 농산물 유통관련 제도개선의 중심은 유통시장에 다양한 유통 경로 및 유통주체를 만들고 이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우선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다음으로 유통과정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유통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유통과정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도매시장의 경우

를 살펴보면 법령상 구분은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그 실제에 있어서는 업무규정의 승인 관련 부분을 제외하면 법령상 구분의 실익은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유통실무에서 중앙도매시장이 가지는 의미와 기능이 평가절하되어서는 곤란하겠지만, 향후 유통관련 규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도매시장 관련 규율을 일차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기능분리 및 차별화된 접근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또한 개별적인 제도들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 예컨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지정·허가 등과 관련된 제도보완이나 기타 행정처분 등 법령의 집행·적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농산물 유통과 관련한 각종 논의들은 대체로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중첩 내지 충돌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어느 하나 쉽사리 결론에 이르기에는 고려되어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첨예한 논란을 불러올 개연성이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중국적인 목표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출발선에 있는 생산자와 도착점에 있는 최종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여야 한다는 것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유통단계에서의 규제를 함에 있어서는 생산자·소비자·유통주체의 이해관계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되고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 고 자 료

- 관계부처 합동,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2013. 5. 27.
- 권승구,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시스템 비교 연구 -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식품유통연구 제26권제3호, 2009. 9.
- 김동환, SCM 구축을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시스템 개선 방안, 농업·농촌의 길, 2010.
- 김동환/류상모, 일본의 농산물 유통정책, 세계농업 제144호, 2012. 8.
- 김동환/송정환, 농산물 유통개선방안 - 유통효율화와 가격안정화를 중심으로, 제87차 신유통토론회 발제자료, 2013.
- 김병률 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및 보완대책 중간성과 분석 - 2013. 5. 27. 대책 및 2014. 5. 보완대책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7.
- 농림수산식품부, 농안법을 알면 농산물 유통이 보인다. 2013. 1.
-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2015. 9.
- 최진욱 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심층평가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12.

<http://www.kawa.or.kr/situ/s5.asp>

<http://market.okdab.com/whl/sst/WhlSstWholeSaleEbs.do>

별첨 : 일본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식품 유통부문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식품에 관한 유통구조의 합리화와 유통기능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일반소비자의 이익촉진과 농림어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식품”이란 음식료품(그 원료 또는 원료로 사용된 농림수산물 및 화초를 포함한다) 중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1960년 법률 제145호)에 규정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재생의료 등 제품 이외의 것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식품 생산 제조 등 제휴 사업”이란 식품제조업자 등(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판매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협동조합, 사업협동소조합, 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식품제조업자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구성원(이하 단순히 “구성원”이라 한다)으로 하는 것(이하 “식품제조사업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 및 농림어업자 또는 농업협동조합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농림어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들의 출자 또는 납입에 관계된 법인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이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식품의 생산부터 소매에 이르는 일련의 유통행정(식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되는 농림수산물에 있어서는 그 생산부터 해당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이르는 일련의 유통과정)의 종합적인 개선을 도

모하는 사업으로 식품에 관련된 유통기구의 합리화와 유통기능의 고도화에 특히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제조업자 등 또는 식품제조사업 협동조합 등과 농림어업자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과의 사이에 있어서 식품의 안정적인 거래 관계 확립

2. 전호에 규정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조치

가. 식품 생산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의 정비 그 밖에 식품생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나. 식품의 신선도 유지 그 밖에 품질관리를 확실히 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설의 정비

다. 품질이 우수한 식품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식품의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의 정비로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조치와 함께 실시하는 것

③ 이 법률에서 “도매시장기능 고도화 사업”이란 다음에 규정하는 사업으로 식품에 관련된 유통기구의 합리화와 유통기능의 고도화에 특히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매시장[「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2007년 법률 제57호) 별표 제1제19호의 가운데란(中欄)에 규정하는 부설집단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개설하는 자 또는 도매시장에서 도매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업무를 하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도매시장개설자 등”이라 한다)이 다음에 정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실시함으로써 도매시장 기능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사업

가. 식품의 신선도 유지 그 밖에 품질관리를 확실히 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설의 정비, 식품의 구분 및 반송의 자동화 등 식품의 처리 업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정비 그 밖에 도매시장의 시설 근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

나. 경매 또는 입찰에 관련된 업무의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처리체제의 정비 그 밖에 도매시장 유통기능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

다. 도매시장의 기능 고도화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촉진 그 밖에 도매시장의 업무를 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라. 도매시장개설자 등 중 정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영규모 확대, 경영관리의 합리화 그 밖에 경영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

2.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자가 다른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자와 연계하여 전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정한 조치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것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도매시장기능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사업

④ 이 법률에서 “식품판매업 근대화사업”이란 식품판매업자(식품의 판매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사업협동조합, 사업협동소조합, 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식품판매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하 “식품판매사업 협동조합 등”이라 함)이 다음 정하는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식품판매사업의 근대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식품에 관련된 유통기구의 합리화와 유통기능의 고도화에 특히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의 구입, 제조, 보관 또는 배송의 공동화 그 밖에 식품의 판매에 관한 업무 일부의 공동화

2. 전호에 정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정비

3. 제1호에 정한 조치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다음의 조치

가. 식품의 신선도 유지 그 밖에 품질관리를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설의 정비, 식품의 구분 및 반송 자동화 등 식품의 처리업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정비 그 밖에 식품의 판매에 관한 업무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의 근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

나. 경영 관리의 합리화, 거래 관계의 개선 그 밖에 식품판매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⑤ 이 법률에서 “식품상업집적시설 정비사업”이란 식품판매업자 또는 식품판매사업 협동조합 등의 출자 또는 납입에 관련된 법인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이 식품상업집적시설[상당수의 식품판매업자의 점포가 집적하는 시설

로 해당 시설에 부대하는 주차장, 휴게소 그 밖에 해당 시설 이용자의 편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것 중 다음에 정하는 시설을 갖춘 것(이와 일체적으로 설치되는 창고 그 밖에 식품에 관련된 유통업무용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식품에 관련된 유통기구의 합리화와 유통기능의 고도화에 특히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그 밖에 식품구매 및 조리에 관한 일반소비자의 편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2. 지역의 특색 있는 식품으로 일반소비자들의 식생활의 다양화에 이바지한다고 인정되는 것의 전시 및 판매 시설

⑥ 이 법률에서 “신기술 연구개발사업”이란 식품제조업자 등, 식품제조사업협동조합 등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이 다음에 정하는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식품에 관련된 유통구조의 합리화와 유통기능의 고도화에 특히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의 신선도 유지 그 밖에 품질관리를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신기술의 연구개발

2. 품질이 우수한 식품의 개발에 필요한 신기술의 연구개발로 전호에 정한 연구개발과 함께 실시하는 것

3. 식품의 구입, 처리 또는 배송의 합리화 그 밖에 식품 유통의 원활화에 이바지하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제2장 식품 유통부문의 구조개선

제3조(기본방침) ① 농림수산대신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 유통부문의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기본 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사항을 정한다.

1. 식품의 유통부문의 구조개선의 기본적인 방향
 2. 다음에 정하는 사업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가. 식품생산제조 등 제휴사업
 - 나. 도매시장 기능 고도화사업
 - 다. 식품판매업 근대화사업
 - 라. 식품상업집적시설 정비사업
 - 마. 신기술 연구개발사업
 3. 전호에 정한 것 외에 식품의 유통부문의 구조개선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4. 일반소비자의 이익의 증진, 농림어업의 진흥 그 밖에 식품의 유통부문의 구조개선 시 배려하여야 할 중요사항
 - ③ 농림수산대신은 경제사정의 변동 그 밖에 정세의 추이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기본방침을 변경한다.
 - ④ 농림수산대신은 기본방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식량 농업·농촌 정책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농림수산대신은 제1항에 따라 기본방침을 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를 공표한다.
- 제4조(구조개선계획의 인정) ① 식품제조업자 등 또는 식품제조사업 협동조합 등은 농림어업자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과 공동으로, 그 수행하는 사업(식품제조사업 협동조합 등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의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식품생산제조 등 제휴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여 해당 계획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도매시장개설자 등은 도매시장기능 고도화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여 해당 계획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식품판매사업 협동조합 등은 그 구성원이 하는 식품의 판매사업에 대하여 식품판매업 근대화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여 해당 계획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④ 식품판매업자 또는 식품판매사업 협동조합 등의 출자 또는 납입에 관련된 법인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식품상업집적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여 해당 계획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⑤ 식품제조업자 등, 식품제조사업 협동조합 등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은 그 수행하는 사업(식품제조사업 협동조합 등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의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여 해당 계획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⑥ 전 각항의 계획(이하 “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 각항에 규정하는 사업(이하 “구조개선사업”이라 한다.)의 목표
2. 구조개선사업의 내용 및 실시시기
3. 구조개선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조달방법
4. 식품제조사업 협동조합 등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이 신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시험연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준

⑦ 농림수산대신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인정신청이 있었던 경우, 그 구조개선계획이 기본 방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 일반소비자의 이익 증진 및 농림어업 진흥에 기여하는 것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인정을 행한다.

제5조(설계의 변경 등) ① 전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인정에 관련된 구조개선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농림수산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대신은 인정사업자가 인정에 관련된 구조개선계획(전항에 따른 변경의 인정이 있었던 때에는 그 변경 후의 것. 이하“인정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구조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조 제7항은 제1항의 인정에 준용한다.

제6조(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로부터의 자금 대부)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는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업무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확보 또는 농림어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장기이면서 저리의 자금으로 각각 해당 각호에 정하는 것(다른 금융기관이 융통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한한다)중 농림수산대신 및 재무대신이 지정하는 것의 대부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인정에 관련된 인정계획에 따라 식품생산제조 등 제휴사업을 하는 식품제조업자 등, 식품제조사업 협동조합 등, 농림어업자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 해당 인정계획에 따라 식품생산제조 등 제휴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식품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대부되는 것은 중소기업자(「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에 대한 것으로, 그 상환기한이 10년을 초과하는 것에 한하고, 식품제조사업 협동조합 등에게 대부되는 것은 그 상환기한이 10년을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농림어업자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대부되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조달하기 곤란한 것에 한한다]

2. 제4조제2항의 인정에 관련된 인정계획에 따라 도매시장기능 고도화사업을 하는 도매시장개설자 등으로서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것 : 해당 인정계획에 따른 도매시장기능 고도화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중소기업자에 대한 것으로 그 상환기한이 10년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② 전항의 자금 대부의 이율,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가 하는 같은 항에 규정하는 자금의 대부에 관한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 제31조제2항제1호나목, 제41조제2호, 제53조,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4조제1항제4호, 제73조제3호 및 별표 제2제9호의 적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 및 제12조제1항 중 “정한 업무”는 “정한 업무 및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로,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1호나목, 제41조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4호 중 “또는 별표 제2제2호에 정한 업무”는 “별표 제2제2호에 정한 업무 또는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로, 같은 법 제53조 중 “같은 항 제5호”는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 및 제11조제1항제5호”로, 같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제1항 중 “이 법률”은 “이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으로, 같은 법 제73조제3호 중 “제11조”는 “제11조 및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제6조제1항”으로, 같은 법 별표 제2제9호 중 “또는 별표 제1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하란에 정하는 자금의 대부 업무”는 “별표 제1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하란에 정하는 자금의 대부 업무 또는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로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자금의 확보) 국가는 인정계획에 따라 구조개선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확보에 노력한다.

제9조(지도 및 조언) 국가는 인정사업자에 대하여 구조개선사업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한다.

제10조(보고의 요구) 농림수산대신은 인정사업자에 대하여 구조개선사업의

실시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기구

제11조(지정) ① 농림수산대신은 식품의 유통부문의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으로, 다음 조 각호에 정한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그 신청에 따라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로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지정을 한 때에는 해당 기구의 명칭, 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기구는 그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농림수산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신고가 있었던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 기구는 다음에 정한 업무를 한다.

1. 인정계획에 관한 구조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인정 구조 개선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된 채무를 보증하는 것
2. 인정구조개선사업에 대하여 그 실시예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해당 인정구조개선 사업에 참가하는 것
3. 인정구조개선사업을 하는 자의 위탁을 받아 인정계획에 따른 시설을 정비하는 것
4. 전 2호에 정한 업무에 의하여 정비하는 시설과 일체로서 정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일반소비자의 이익증진 또는 농림어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정비하는 것
5. 인정구조개선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알선하는 것
6. 지역의 특색있는 식품 그 밖에 특히 보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식품의

유통 및 소비증진을 도모하는 것

7. 식품제조업자 등 또는 도매시장의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
8. 식품의 유통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수집 및 제공하는 것
9. 식품의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것
10. 식품의 유통부문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회 및 상담에 따른 것 그 밖의 원조를 하는 것
11. 전 각호에 정한 업무에 수반하는 업무를 하는 것

제13조(업무의 위임) ① 기구는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아 전조 제1호에 정한 업무(채무의 보증결정을 제외한다)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을 받아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

제14조(업무규정의 인가) ① 기구는 제12조제1호에 정한 업무(이하 “채무보증업무”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업무의 개시 전에 해당 업무의 실시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인가를 한 업무규정이 채무보증업무의 적당하고 확실한 실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규정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업무규정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계획 등) ① 기구는 매사업년도,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기구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사업년도 종료 후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구분경리) 기구는 채무보증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보증업무에 관련된 경리와 그 밖의 업무에 관련한 경리를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농림수산성령에의 위임) 전 2조에 정하는 것 외에 기구가 채무보증업무를 하는 경우 기구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농림수산대신은 제12조 각호에 정한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기구에 대하여 해당 업무 또는 자산의 상황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기구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또는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개선명령) 농림수산대신은 제12조 각호에 정하는 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구에 대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지정의 취소) ① 농림수산대신은 기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지정(이하 이 조에서 “지정”이라 한다)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 각호에 정하는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
 3. 이 장의 규정 또는 해당 규정에 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업무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보증업무를 한 때
- ④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1조(협의) 농림수산대신은 다음의 경우에는 미리 재무대신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인가를 하려는 때
2. 제15조제2항의 승인을 하려는 때
3. 제17조의 농림수산성령을 정하려는 때

제4장 잡칙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률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의 권한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농정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3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하거나 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24조 제1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人)의 대리인, 사용자 그 밖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 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각 본조의 형에 처한다.

별첨 : 일본 도매시장법

일본도매시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도매시장의 정비를 계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조치, 도매시장의 개설 및 도매시장의 도매 그 외 거래에 관한 규제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도매시장의 정비를 촉진 및 그 적정하고 건전한 운영을 확보함으로써 신선 식료품 등의 거래의 적정화와 그 생산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신선 식료품 등”이란 채소, 과일, 어류, 육류 등의 신선 식료품 그 외 일반 소비자가 일상생활용으로 제공하는 식료품 및 화훼 그 외 일반 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농축수산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도매시장”이란 신선 식료품 등의 도매를 위해서 개설되는 시장으로서 도매장, 자동차 주차장 그 다른 신선 식료품 등의 거래 및 입하한 물건의 매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계속해서 개장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 “중양도매시장”이란 신선 식료품 등의 유통 및 소비에 특별히 중요한 도시 및 그 주변 지역에서의 신선 식료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확보하기 위한 신선 식료품 등의 도매 핵심 거점이 되는 것과 함께 당해 지역 밖의 광역에 걸친 신선 식료품 등의 유통 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아서 개설되는 도매시장을 말한다.

④ 이 법률에서 “지방도매시장”이란 중앙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으로서 그 시설이 정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의 제한) ① 중앙도매시장 또는 지방도매시장의 명칭 중에는 중앙도매시장 또는 지방도매시장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도매시장으로서 중앙도매시장 또는 지방도매시장이 아닌 것의 명칭 중에는 중앙도매시장 또는 지방도매시장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 등

제4조(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 농림수산대신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방침(이하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이라고 한다.)을 정해야 한다.

②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에서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한다.

1. 신선 식료품 등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장기 전망에 따른 도매시장의 적정 배치의 목표
2. 근대적인 도매시장의 입지 및 시설의 종류, 규모, 배치 및 구조에 관한 기본적 지표
3. 도매시장에서의 거래 및 물품의 하역, 입하한 물건의 매각, 보관 등의 합리화 및 물품의 품질 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도매업무(도매시장에 출하할 신선 식료품 등의 출하자로부터 도매판매의 위탁을 받거나 사들이거나 하는 당해 도매시장에서 도매를 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동일) 또는 중도매의 업무(도매시장을 개설하는 자가 당해 도매시장 내에 설치하는 점포에서 당해 도매시장에 관련된 도매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부터 도매를 받은 신선 식료품 등을 분류하고 또는 조제해서 판매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동일)을 하는 사람의 경영규모의 확대, 경영관리의 합리화 등 경영의 근대화의 목표

5. 그 외 도매시장의 정비에 관한 중요 사항

- ③ 전항 제1호의 목표를 정할 때는 신선 식료품 등의 유통의 광역화 및 정보화의 진전 상황을 고려한 도매시장의 재편에 대해서 배려해야 한다.
- ④ 농림수산대신은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을 정하고자 할 때는 식량·농업·농촌정책심의회 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⑤ 농림수산대신은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해야 한다.
- ⑥ 전 2항의 규정은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5조(중앙도매시장정비계획) ① 농림수산대신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중앙도매시장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하 “중앙도매시장정비계획”이라고 한다.)을 정해야 한다.

② 중앙도매시장정비계획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내용은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에 맞아야 한다.

- 1. 신선 식료품 등의 유통 및 소비상 특별히 중요한 도시로서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인정되는 것의 명칭
- 2. 그 취급품목의 적정화 혹은 그 시설의 개선을 도모할 것 또는 운영의 광역화 혹은 지방도매시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앙도매시장의 명칭
- 3. 취급품목의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4. 시설의 개량, 조성, 취득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5. 그 외 중앙도매시장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③ 농림수산대신은 중앙도매시장정비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는 식량·농업·농촌정책심의회 의 의견을 듣는 것과 함께 관계 지방공공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④ 농림수산대신은 중앙도매시장정비계획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⑤ 전 3항의 규정은 중앙도매시장정비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6조(도도부현 도매시장정비계획) ① 도도부현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도부현에서의 도매시장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하 “도도부현 도매시장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도도부현 도매시장정비계획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내용은 도매시장정비기본방침 및 중앙도매시장정비계획에 맞아야 한다.

1. 그 구역 또는 그 구역을 나누어 정하는 구역 별로 신선 식료품 등의 유통 상황에 맞는 도매시장의 적정배치 방침
2. 그 구역에서의 신선 식료품 등의 유통 상황에 맞는 근대적인 도매시장의 입지 및 시설의 종류, 규모, 배치 및 구조에 관한 지표
3. 도매시장에서의 거래 및 물품의 하역, 입하한 물건의 매각, 보관 등의 합리화 및 물품의 품질 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4. 그 외 도매시장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③ 도도부현은 도도부현 도매시장정비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는 당해 도도부현의 구역 내의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19 제1항의 지정도시와 협의해야 한다.

④ 도도부현은 도도부현 도매시장정비계획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⑤ 전 3항의 규정은 도도부현 도매시장정비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3장 중앙도매시장

제1절 개설

제7조(개설구역) ① 농림수산대신은 중앙도매시장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중앙

도매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및 그 주변 지역으로서, 그 구역 내에서 신선 식료품 등의 유통 사정에 비추어 그 구역을 일체로 해서 신선 식료품 등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 구역을 중앙도매시장 개설구역(이하 이 장에서 “개설구역”라고 한다.)으로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대신은 개설구역을 지정할 때는 식량·농업·농촌정책심의회회의 의견을 듣는 것과 함께 관계 지방공공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개설구역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8조(개설의 인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공공단체는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아서 개설구역에서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1. 도도부현 및 정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인구를 가지는 시로서 중앙도매시장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것

2. 중앙도매시장 개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지방자치법 제284조 제1항의 일부 사무조합 또는 광역연합으로서, 전호에 드는 도도부현 또는 시의 일 이상이 가입하고 당해 개설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지방공공단체만이 조직하는 것

제9조(인가 신청) 전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공단체는 동조의 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하고 이를 신청서에 첨부해서,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항의 업무규정에는 적어도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해야 한다.

1. 중앙도매시장의 위치 및 면적
2. 취급품목
3. 개장의 기일 및 시간

4. 도매의 업무에 관한 매매거래 및 결제방법(위탁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
5. 도매의 업무에 관련된 물품의 품질관리 방법
6. 도매의 업무를 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
7. 도매의 업무를 행하는 자 이외의 관계 사업자에 관한 사항(이 장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것으로 된 사항에 한한다.)
8. 시설 사용료

③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해야 한다.

1. 취급품목별 공급대상인구 및 취급의 수량 및 금액의 전망
2. 시설의 종류, 규모, 배치 및 구조
3. 개설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재원 및 상각에 관한 계획

제10조 농림수산대신은 제8조의 인가 신청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아니면, 동조의 인가를 해서는 안 된다.

1. 당해 신청에 관련된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이 중앙도매시장정비계획에 적합할 것
2. 당해 신청에 관련된 중앙도매시장이 그 개설구역에서의 신선 식료품 등의 도매의 중핵적 거점으로서 적절한 장소에 개설되고 상당 규모의 시설을 가질 것
3. 업무규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또한 업무규정에 규정하는 전조 제2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제시하는 사항이 중앙도매시장에서 업무의 적정하고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는 견지에서 보아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사업계획이 적절하고 동시에 그 수행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

제11조(업무규정에 규정하는 사항 등의 변경) ① 제8조의 인가를 받은 지방 공공단체(이하 이 장에서 “개설자”라고 한다.)는 제9조 제2항 각 호에 기재한 사항 또는 동조 제3항 제2호에 기재하는 사항의 변경(정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설자는 제9조 제2항 제3호부터 제7호에 기재한 사항의 변경에 관련된 전항의 인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정한 도매업자(제1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는 동일), 중도매업자(제33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 제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매매 참가자 그 외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2 제1항의 시장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전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12조(개설의 촉진 등의 권고) 농림수산대신은 중앙도매시장정비계획의 적정하고 원활한 실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미리 식량 농업·농촌정책심의회 의견 들어 중앙도매시장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당해 도시의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을 촉진하여, 일체로 해서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거나 개설되는 중앙도매시장의 위치, 규모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3조(중앙도매시장개설운영협의회) ① 제8조 제1호 혹은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개설자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 또는 그 업무의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중앙도매시장개설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학식 경험자 중 협의회를 설치하는 전항의 지방공공단체 또는 개설자가 위촉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공공단체 또는 개설자는 당해 중앙도매시장에 관한 개설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

공공단체와 협의하여, 당해 다른 지방공공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원을 협의회의 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③ 전 2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를 설치하는 제1항의 지방공공단체나 개설자가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 2 ① 개설자는 중앙도매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으로 시장거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규정의 변경(제9조 제2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기재한 사항의 변경에 한한다.)에 관해서, 및 당해 중앙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매매거래의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설자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매업자, 중도매업자, 제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매매참가자 그 외 이해 관련자 및 학식 경험자 중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설자가 위촉한다.

④ 전3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의 3(개설자 지위의 승계)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공공단체로서, 실제로 개설되어 있는 중앙도매시장(중앙도매시장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운영의 광역화를 추진할 필요가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의 개설자로부터 당해 중앙도매시장의 시설에 관한 권원을 취득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되려는 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아서, 당해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1. 도도부현에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구역 전부를 관할하는 것

2. 중앙도매시장 개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지방자치법

제284조 제1항의 일부사무조합 또는 광역연합으로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공공단체(당해 개설자가 제8조 제2호에 규정하는 일부사무조합 또는 광역연합인 경우에는 이들을 조직하는 지방공공단체)가 가입하고 당해 중앙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지방공공단체만이 조직하는 것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가 있을 때는, 당해 중앙도매시장에 관한 종전의 개설자에 대한 제8조의 인가는 효력을 잃는다.

③ 제9조 및 제10조(동조 제3호 및 제4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13조의 4(개설자 지위를 승계의 효과)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이후 중앙도매시장(이하 이 조에서 “신도매시장”이라 한다.)에 관련된 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신업무규정”이라 함)이 다음에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전의 중앙도매시장(이하 이 조에서 “구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도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구도매시장 도매업자”라고 한다.)는 신도매시장에서 신도매시장의 도매의 업무에 관련되는 시장 및 취급품목의 부류와 동일한 시장 및 취급품목의 부류에 대해서 도매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1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업무규정에서 규정된 취급품목에 관련되는 취급품목의 부류가 신도매시장 도매업자에 대한 제15조 제1항의 허가와 관련한 취급품목의 부류의 전부를 포함하고 있을 것

2. 신업무규정에서 신도매시장에서 도매의 업무를 실시하는 사람의 수의 최고 한도가 정해진 경우에는 당해 수의 최고 한도가 신도매시장 도매업자의 수를 밑돌지 않을 것

② 신업무규정이 다음에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신도매시장의 중도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도매시장 중도매업자”라고 한다.)는 신도매시장에서 신도매시장의 중도매의 업무와 관련되는 시장 및 취급품목의 부류

와 동일한 시장 및 취급품목의 부류에 대해서 중도매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33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업무규정에서 정한 취급품목에 관련된 취급품목의 부류가 신도매시장 중도매업자에 대한 제33조 제1항의 허가와 관련한 취급품목의 부류의 전부를 포함할 것

2. 신업무규정에서 신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의 업무를 실시하는 사람의 수의 최고 한도가 정해진 경우에는 당해 수의 최고 한도가 신도매시장 중도매업자의 수를 밑돌지 않을 것

③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대신이 신도매시장 도매업자에 대해서 한 처분, 절차 그 외의 행위 또는 신도매시장 도매업자가 농림수산대신에 대해서 한 절차 그 외의 행위는 농림수산대신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자에게 한 처분, 절차 그 외의 행위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자가 농림수산대신에 대해서 한 절차 그 외의 행위로 간주한다.

제13조의 5(지역도매시장으로의 전환) ① 중앙도매시장정비계획에서 정해진 지방도매시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당해 개설자로부터 당해 중앙도매시장의 시설에 관한 권원을 취득하여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얻어서 당해 중앙도매시장을 지방도매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55조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이 있을 때는, 당해 중앙도매시장에 관한 제8조의 인가는 효력을 잃는다.

④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제1의 허가에 대해서 준용한다.

⑤ 도도부현지사는 제1항의 허가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수

산대신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의 6(지역도매시장으로의 전환 효과)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 후 지방도매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에서 정한 취급품목에 관련되는 취급품목의 부류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 전의 중앙도매시장 도매업자에 대한 제15조 제1항의 허가와 관련한 취급품목의 부류의 전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매업자는 당해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의 업무에 관련되는 시장 및 취급품목의 부류와 동일한 시장 및 취급품목의 부류에 대해서 도매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58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폐지의 인가) ① 개설자는 중앙도매시장을 폐지하려고 할 때는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대신은 중앙도매시장의 폐지에 의해서 일반 소비자 및 관계 사업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가 아니면 전항의 인가를 해서는 안 된다.

제2절 도매업자 등

제15조(도매업무 허가) ① 중앙도매시장에서 도매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허가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시장(이하 이 장에서 단순히 “시장”이라 함) 및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취급품목의 부류(이하 이 장에서 단순히 “취급품목의 부류”라고 한다.) 마다 한다.

제16조(허가 신청) ① 전조 제1항의 허가를 받아서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개설자를 경유하여 농림수산대신에

게 제출해야 한다.

1. 명칭 및 주소

2. 자본금 또는 출자액 및 임원 이름

3. 전조 제1항의 허가를 받아서 도매의 업무를 하려고 하는 시장 및 취급품목

② 개설자는 전항의 신청서를 수리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서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당해 개설자는 신청자가 당해 중앙도매시장에서 도매의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7조(허가기준) ① 농림수산대신은 제15조 제1항의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항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1. 신청자가 법인이 아닐 때.

2. 신청자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벌금형에 처해진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을 끝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하지 않는 것인 때

3. 신청자가 제4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를 받고 그 취소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일 때

4. 신청자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중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가. 파산자로 복권이 되지 않은 자

나. 금고 이상형에 처해진 자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에 처해진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을 끝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다. 제4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를 받은 법인의 그 처분을 받은 원인이 된 사항이 발생한 당시 실제로 그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으로 재임한 자(당해 사항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를 제외)로서 그 처분의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라. 제4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명령을 받은 법인의 당해 명령에 의해 해임되어야 할 자로 된 자, 그 처분의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5. 신청자가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아닐 때

6. 신청자의 순자산액이 그 신청에 관련되는 취급품목의 부류에 대해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순자산 기준액(그 자가 다른 취급품목의 부류에 대해서 제1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아 있는지 또는 그 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취급품목의 부류 및 당해 다른 취급품목의 부류에 대해서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순자산 기준액을 합산한 금액)을 하회하고 있을 때

7. 업무규정에서 중앙도매시장에서 도매의 업무를 실시하는 사람의 수의 최고 한도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함에 따라 도매업자의 수가 당해 최고 한도를 넘게 될 때

② 농림수산대신은 제15조 제1항의 허가 신청을 한 자가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를 받고 그 취소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일 때는 제15조 제1항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6호의 순자산액은 자산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고 얻은 액으로 하고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처분의 절차) 농림수산대신은 제15조 제1항의 허가 또는 승인 거부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개설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19조(순자산액) 도매업자의 순자산 기준액은 취급품목의 부류별로 중앙도매시장의 업무 규모, 도매의 업무를 하는 자의 수의 최고한도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농림수산대신이 정한다.

② 농림수산대신은 도매업자의 순자산액이 그 자가 도매의 업무를 하는 취급품목의 부류에 대해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순자산 기준액(그 자가 도매의 업무를 하는 취급품목의 부류가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각각 취급품목의 부류에 대해서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순자산 기준액을 합산한 금액)을 하회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당해 도매업자에 대해서,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해당 처분을 받은 자에게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순자산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순자산 기준액 이상의 금액으로 된 사실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그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④ 농림수산대신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받은 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동항의 신청이 없을 때, 또는 당해 기간 내에 해당 신청이 있어서도 농림수산대신이 이를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당해 기간 내에 2개 이상의 신청이 있었을 때는 그 신청 모두를 농림수산대신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당해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그 자와 관련되는 제15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에 관련한 청문 기일에 있어서의 심리는 공개로 하여야 한다.

⑥ 제17조 제3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순자산액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20조(순자산액의 보고 등) ① 도매업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2번, 농림수산대신에게 그 순자산액을 보고해야 한다.

② 도매업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기간마다, 농림수산대신에 대하여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재산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7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순자산액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21조(사업의 양도 및 양수와 합병 및 분할) ① 도매업자가 사업(중앙도매시장의 도매의 업무에 관련된 것에 한함.)의 양도를 하는 경우에 양도인 및 양수인이 양도 및 양수에 대해서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았을 때는 양수인은 도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도매업자인 법인의 합병의 경우(도매업자인 법인과 도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해서 도매업자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를 제외) 또는 분할의 경우(중앙도매시장의 도매의 업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당해 합병 또는 분할에 대하여 농림수산대신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에 따른 당해 업무를 승계한 법인은 도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전항의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자를 경유하여 신청서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인가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 제2항 중 “전항의 신청서”란 “제21조 제3항의 신청서”로, “신청자”란 “그 신청에 관련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혹은 분할에 따른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의 업무를 승계하는 법인”으로, 동조 제3항 중 “제1항의 신청서”란 “제21조 제3항의 신청서”로, 제17조 제1항 중 “제15조 제1항의 허가 신청”이란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인가 신청”으로, “신청자”란 “그 신청에 관련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혹은 분할에 따른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의 업무를 승계하는 법인”으로,

동조 제2항 중 “제15조 제1항의 허가 신청을 한 자”란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인가 신청에 관련되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혹은 분할에 따른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의 업무를 승계하는 법인”으로, “제15조 제1항의 허가를”이란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인가를”로, 제18조 중 “제15조 제1항의 허가 또는 승인 거부 처분”란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인가 또는 인가의 거부처분”으로 한다.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명칭 변경의 신고) 도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개설자를 경유하여 농림수산대신에 신고해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의 허가와 관련한 도매의 업무를 시작하고 정지하거나 재개했을 때.
2. 제15조 제1항의 허가와 관련한 도매의 업무를 폐지했을 때.
3.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때.

제25조(허가의 취소) ① 농림수산대신은 도매업자가 제1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하나에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제15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② 농림수산대신은 도매업자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5조 제1항의 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서 한달 안에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의 업무를 시작하지 않을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한달 이상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의 업무를 중단했을 때.

③ 제19조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와 관련한 청문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26조(도매업자의 보증금) ① 도매업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5조 제1항의 허가와 관련한 시장 및 취급품목의 부류별로 개설자에 보증금을 예탁한 후가 아니면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의 업무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② 전항의 보증금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채 증권, 지방채 증권 그 외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유가증권으로 이에 충당할 수 있다.

③ 개설자는 중앙도매시장에 대해서 도매업자로부터 수수하는 사용료, 보관료 및 수수료에 관해서, 당해 도매업자가 예탁한 제1항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에 앞서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도매업자에 대해서 중앙도매시장에서 도매를 위한 판매 또는 판매 위탁한 자는 당해 판매 또는 판매 위탁에 의한 채권에 관해서, 당해 도매업자가 예탁한 제1항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에 앞서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제3항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는, 전항의 우선 변제 받을 권리에 우선한다.

제27조(사업 연도) 도매업자의 사업 연도는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또는 4월부터 9월까지 및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로 한다.

제28조(사업보고서의 제출) 도매업자는 사업 년도마다,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 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이를 개설자를 경유하여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사업보고서 사본의 비치 및 열람) ① 도매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을 했을 때는 신속하게 동조의 사업보고서(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한한다)의 사본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도매업자는 당해 도매업자에 대해서 중앙도매시장의 도매를 위한 판매 또는 판매 위탁한 자로부터, 전항의 사본을 열람하고 싶다는 취지의 신청이 있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30조(장부의 구분 경리) 도매업자는 중앙도매시장에서의 거래에 대해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자기 계산에 의한 거래와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거래를 장부상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중개업무 허가) ①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의 업무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

② 전항의 허가는 시장 및 취급품목의 부류별로 한다.

③ 개설자는 다음 항의 규정에 의해 중도매의 업무를 하는 자를 두지 않도록 규정한 시장 및 취급품목의 부류를 제외하고, 시장 및 취급품목의 부류별로 업무규정으로 중도매의 업무를 하는 자의 허가의 기준, 수의 최고 한도, 보증금 그 외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해야 한다.

④ 개설자는 시장의 업무 규모, 취급품목의 성질, 거래 상황 등에 비추어 시장 및 취급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중도매의 업무를 하는 자를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업무규정으로 중도매의 업무를 하는 자를 두지 못하는 시장 및 취급품목의 부류를 정할 수 있다.

제3절 매매거래

제34조(매매거래의 원칙) 중앙도매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공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제35조(매매거래 방법) ① 도매업자는 중앙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진 도매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호에서 드는 신선 식료품 등의 구분에 응해서, 당해 각호에서 드는 매매거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①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 신선 식료품 등으로서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것 :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② 매일의 도매 예정 수량 중 적어도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적당한 신선 식료품 등으로서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것 : 매일의 도매예정 수량 중, 개설자가 신선 식료품 등의 품목별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 혹은 입찰의 방법 또는 상대거래 방법(하나의 도매업자와 하나의 도매의 상대방이 개별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상대매매”이라 한다.)

③ 전2호 이외의 신선 식료품 등으로서 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것 : 경매 혹은 입찰의 방법 또는 상대매매

② 전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선 식료품 등(동항 제2호의 신선 식료품 등에 있어서는, 동호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재해 발생 그 외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가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대 매매에 따를 수 있도록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신선 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당해 시장에서의 입하량이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감소했을 때 그 외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가

지시한 때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 개설자는 제1항 제2호의 일정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신속히 공표해야 한다.

⑤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개설자가 제1항 제2호의 일정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36조(차별적 취급 금지 등) ① 도매업자는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의 업무에 관한 출하자 또는 중도매업자나 매매 참가자(중앙도매시장에서 도매업자로부터 도매를 받는 것에 대해 시장 및 취급품목의 부류별로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에 대해서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도매업자는 제15조 제1항의 허가에 관한 취급 품목의 부류에 속하는 신선 식료품 등에 대해서 중앙도매시장에서 도매를 위한 판매 위탁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인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37조(도매의 상대방의 제한) 도매업자는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의 업무에 대해서는 중도매업자 및 매매 참가자(그 도매업자의 당해 도매의 업무에 관련된 시장 및 취급품목의 부류와 동일한 시장 및 취급품목의 부류에 대해서 제33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중도매업자 및 당해 동일한 시장 및 취급 품목의 부류에 대해서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승인을 받은 매매 참가자에 한함. 이하 이 조에서는 동일) 이외의 자에 대하여 도매를 해서는 안 된다. 단, 당해 시장에서의 입하량이 현저하게 많이 잔품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외 농림수산물성령으로 정하는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가 중도매업자 및 매매 참가자의 매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38조 삭제

제39조(시장 밖에 있는 물품의 도매 금지) 도매업자는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 자가 제1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아서 도매업무를 하는 시장 내에 있는 신선 식료품 등 이외의 신선 식료품 등의 도매를 하면 안 된다. 다만,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중앙도매시장과 관련되는 개설구역 내에서 개설자가 지정하는 장소(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이 당해 개설구역 주변 지역에서 일정한 장소를 지정한 때는 그 장소를 포함.)에 있는 신선 식료품 등의 도매를 할 때.

2. 개설자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중앙도매시장과 관련되는 개설구역 내에서 도매업자가 신청한 장소에 있는 신선 식료품 등의 도매를 하는 것 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거래 방법 그 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거래 방법에 의해 신선 식료품 등의 도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해 중앙도매시장에서 효율적인 매매거래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때.

제40조(도매업자에 대한 도매 상대방으로서의 매수 금지) 도매업자(그 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그 자가 제1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아서 도매업무를 하는 시장에서 그 허가과 관련되는 취급 품목의 부류에 속하는 신선 식료품 등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도매의 상대방으로서, 신선 식료품 등을 매수해서는 안 된다.

제41조 삭제

제42조(수탁계약 약관) ① 도매업자는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에서 도매를 위한 판매 위탁의 인수에 대해서 수탁계약 약관을 정해서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다.

② 개설자는 전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수탁계약 약관을 농림수산대신에 신고해야 한다.

제43조(경매인 등록) ① 도매업자가 중앙도매시장에서 하는 도매의 경매인은, 그 자에 대해서 당해 도매업자가 개설자가 행하는 등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개설자는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규정에서, 전항의 등록에 관련된 경매인의 자격 그 외 당해 등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등록을 해야 한다.

③ 개설자는 제1항의 등록과 관련된 경매인이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의 공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을 때는,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자가 중앙도매시장에서 도매의 경매를 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제44조(중도매업자의 업무의 규제) 중도매업자는 제33조 제1항의 허가를 받아서 중개업무를 하는 중앙도매시장에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단, 제2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중도매업자가 그 허가에 관한 취급 품목의 부류에 속하는 신선 식료품 등을 당해 중앙도매시장 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가 당해 중앙도매시장에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없다고 인정했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1. 그 허가에 관한 취급 품목의 부류에 속하는 신선 식료품 등에 대해서 판

매의 위탁의 인수를 하는 것.

2. 그 허가에 관한 취급 품목의 부류에 속하는 신선 식료품 등을 당해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매입해서 판매하는 것.

제44조의 2(결제의 확보) 중앙도매시장에서의 매매거래(도매를 위한 판매의 위탁의 인수를 포함.)을 하는 자의 결제는 지불기일, 지불방법, 그 외의 결제 방법으로서 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45조(매매거래 제한) 개설자는 중앙도매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서 부정행위가 행해지거나 부당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업자, 중도매업자 또는 매매 참가자에게 대해서 중앙도매시장에서의 매매거래(도매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중앙도매시장의 도매를 위한 판매의 위탁의 인수를 포함.)를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개설자에 의한 도매예정수량 등의 공표) ① 개설자는 중앙도매시장의 각 시장에서 취급하는 신선 식료품 등에 대해서 매일 도매가 시작될 때까지 그 날의 주요 품목의 도매 예정 수량 그 외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당해 각 시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② 개설자는 전항의 신선 식료품 등에 대해서,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일 도매업자의 도매 수량 및 가격을 신속히 공표해야 한다.

제47조(도매업자에 의한 도매 예정 수량 등의 공표) ① 도매업자는 전조 제1항의 신선 식료품 등에 대해서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일 도매가 시작될 때까지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구분별로 그날의 주요 품목의 도매예정수량 그 외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도매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② 도매업자는 전항의 신선 식료품 등에 대해서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일 도매가 끝난 후 신속하게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구분별로 매일 도매의 수량, 가격 그 외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제4절 감독

제48조(보고 및 검사) ① 농림수산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개설자나 도매업자에게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혹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개설자나 도매업자의 사무소 그 외의 업무를 행하는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 그 업무 혹은 재산의 상황 혹은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② 개설자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도매업자나 중도매업자에게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혹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도매업자 혹은 중도매업자의 사무소 그 외의 업무를 행하는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 그 업무 혹은 재산의 상황 혹은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검사의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 인정된 것이라고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49조(감독처분) ① 농림수산대신은 개설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한 명령 또는 이들에 근거한 처분에 위반했을 때는 당해 개설자에게 다음에 제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변경 그 외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는 것.

2. 중앙도매시장 개설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앙

도매시장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을 지시하는 것.

② 농림수산대신은 도매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한 명령 또는 이들에 근거한 처분에 위반했을 때는 당해 도매업자에게 다음에 제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변경 그 외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것.

2. 제15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허가와 관련한 도매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하는 것.

3. 그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으로 당해 위반행위를 했지만 해임을 명령하는 것.

③ 농림수산대신은 개설자에 대해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당해 개설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예고한 뒤 공개에 따른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

④ 전항의 예고에서는 기일, 장소 및 처분의 원인이 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의견청취에 있어서는 당해 개설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사안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제19조 제5항의 규정은,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관한 청문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50조 개설자는 도매업자, 중도매업자 또는 매매 참가자가 업무규정 또는 이에 근거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 당해 행위의 중지, 변경 그 외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십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도매업자에 있어서는 제1호, 중도매업자에 있어서는 제2호, 매매참가자에 있어서는 제3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5조 제1항의 허가와 관련한 도매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는 것.

2. 제303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허가와 관련한 중도매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는 것.

3. 제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앙도매시장에 의 입장의 정지를 명령하는 것.

제51조(필요한 개선 조치를 하도록 권고 또는 명령) ① 농림수산대신은 중앙도매시장의 업무의 적정하고 건전한 운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개설자에 대해서, 중앙도매시장의 시설개선, 업무규정의 변경 그 외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대신은 도매업자의 재산 상황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앙도매시장에서 도매업무의 적정하고 건전한 운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도매업자에게 당해 도매업자의 재산에 관해서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유동자산의 합계 금액의 유동부채의 합계 금액에 대한 비율이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비율을 하회한 경우.

2. 자본의 합계 금액의 자본 및 부채의 합계 금액에 대한 비율이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비율을 하회한 경우.

3. 전 2호의 경우 외에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업무의 적정하고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상황을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경우.

③ 농림수산대신 또는 개설자는 중앙도매시장에서 도매업무의 적정하고 건전한 운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도매업자에게 당해 도매업자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해서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개설자는 중도매업자의 재산상황이 중앙도매시장에서 중개 업무의 적정하고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 상황을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 중도매업자에게

당해 중도매업자의 재산에 관해서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개설자는 중앙도매시장의 중개업무의 적정하고 건전한 운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중도매업자에게 당해 중도매업자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해서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1호의 유동자산의 합계 금액 및 유동부채의 합계 금액과 동항 제2호의 자본의 합계 금액 및 자본과 부채의 합계 금액은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산해야 한다.

제5절 잡칙

제52조(도매업무의 대행) ① 개설자는 도매업자가 도매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도매업자(도매업자였던 자를 포함)에 대하여, 그 할 수 없게 된 도매의 업무와 관련되는 도매를 위한 판매의 위탁의 신청이 있었던 신선 식료품 등에 대해서, 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스로 그 도매의 업무를 하거나 다른 도매업자에게 그 도매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의 업무를 하는 개설자에 대해서는 이 장 제2절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53조(보고 및 고시) 개설자는 다음 각호에 드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9조 제2항, 제25조 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제49조 제2항 제2호 혹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매시장에서 매매거래의 제한을 했을 때.
3.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했을 때.
4.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의 업무를 하거나 다른 도매업자에게

도매의 업무를 하게 한 때.

5. 중앙도매시장을 임시로 열거나 또는 휴업했을 때.

② 농림수산대신은 다음 각호에 드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고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

2. 제8조 또는 제14조 제1항의 인가를 한 때.

3. 제15조 제1항의 허가를 한 때.

4. 제19조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 제25조 제1항 혹은 제2항 또는 제49조 제1항 제2호 혹은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

제54조(도도부현 지사의 경유) ① 이 장 또는 이 장에 근거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대신에 대해서 하는 허가 혹은 인가의 신청, 신고 또는 보고는, 도도부현 지사를 경유해야 한다. 단, 도도부현 또는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19 제1항의 지정도시가 개설하는 중앙도매시장에 관련되는 당해 허가 혹은 인가의 신청, 신고 또는 보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본문의 경우, 도도부현 지사는 당해 허가 혹은 인가의 신청, 신고 또는 보고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는 의견을 부쳐서, 이들에 관한 서류를 농림수산대신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4장 지방도매시장

제1절 개설 및 도매의 업무에 대한 허가

제55조(개설 허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마다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허가 신청) 전조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업무규정 및 사업

계획을 정하고 이것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전항의 업무규정에는 지방도매시장의 위치 및 면적, 취급품목 그 외의 도도부현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정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시설의 종류, 규모, 배치 및 구조 그 외의 도도부현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정해야 한다.

제57조(허가의 기준) ① 도도부현 지사는 제55조의 허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조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1. 신청자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은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해서 2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일 때.

2. 신청자가 제6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를 받고, 그 취소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일 때.

3. 신청자가 법인으로서 그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전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4. 신청자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자력 신용을 가지지 않는 자일 때.

5. 업무규정의 내용이 법령(이 장의 규정에 근거한 도도부현의 조례를 포함.)에 위반할 때.

6. 사업계획이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그 수행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

7. 그 신청에 관련된 지방도매시장의 위치가 도도부현 도매시장정비계획에 비추어 현저하게 배치의 적정을 결하고 인정될 때, 또는 그 신청에 관련된 지방도매시장의 위치 또는 시설의 종류, 규모, 배치 또는 구조가 지방도매시장에서의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는 데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도도부현 지사는 제55조의 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신청자가 제

65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를 받고, 그 취소 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일 때에는 동조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8조(도매업무 허가) ① 지방도매시장에서 도매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도도부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및 취급품목의 부류별로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허가의 신청은 신청자가 당해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는 자와 다른 경우에는 당해 개설하는 자를 경유해야 한다.

③ 전항의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는 자는, 제1항의 허가의 신청서를 수리한 때는, 지체 없이 신청자가 당해 지방도매시장에서 도매의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부쳐서, 그 신청서를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9조(허가의 기준) 도도부현 지사는 전조 제1항의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자가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혹은 제3호에 규정하는 자에 해당할 때 또는 신청자가 지방도매시장의 도매의 업무를 공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 또는 자력 신용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때는, 동항의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제60조(폐지의 허가) 제55조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장에서 “개설자”라고 한다.)는 지방도매시장을 폐지하려고 할 때는 도도부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업무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제61조(매매거래의 원칙) 지방도매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공정하고 효율적

이어야 한다.

제61조의 2(차별적 취급의 금지) 개설자 또는 제58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장에서 “도매업자”라고 한다.)는 지방도매시장에서의 업무 운영에 관한 출하자, 매수인 그 외 지방도매시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제62조(매매거래 방법) 도매업자는 지방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진 도매에 대해서는 도도부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자가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 혹은 입찰의 방법 또는 상대 매매에 의하여야 한다.

제63조(도매 예정 수량 등의 공표) 개설자는 도도부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에서 취급하는 신선 식료품 등에 대해서 매일의 도매예정수량 및 도매업자의 도매 수량 및 가격을 공표해야 한다.

제64조(업무규정의 변경) 개설자는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도부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57조 제1항(업무규정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전항의 승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65조(허가의 취소 등) ① 도도부현 지사는 개설자 또는 도매업자가 제오십칠조 제1항 제일호에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기에 이르렀을 때(개설자 또는 도매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중에 동호에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에 이르렀을 때를 포함.) 또는 그 업무를 행하기에 필요한 자력 신용을 가지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5조 또는 제58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② 도도부현 지사는 개설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55 혹은 제58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률,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 이 장의 규정에 근거한 도도부현의 조례 또는 업무규정을 위반했을 때.

2. 제55조 또는 제58조 제1항의 허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서 한 달 안에 그 업무를 시작하지 않을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한달 이상 그 업무를 중단했을 때.

③ 제19조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와 관련한 청문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66조(보고 및 검사) ① 도도부현 지사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개설자나 도매업자에게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혹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개설자나 도매업자의 사무소 그 외 업무를 행하는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 그 업무 혹은 재산의 상황 혹은 장부, 서류 그 외 물건을 검사시킬 수 있다.

② 제4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검사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3절 잡칙

제67조(중앙도매시장 개설구역 내의 지방도매시장) ① 도도부현 지사는 제55조의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이 중앙도매시장 개설구역 내의 지방도매시장에 관련되는 것일 때는 의견을 부쳐서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고 농림수산대신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② 도도부현 지사는 중앙도매시장 개설구역 내의 지방도매시장에 대해서 제55조의 허가를 했을 때, 또는 제6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

분(개설자에 대한 처분에 국한.)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8조(도도부현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 장에 규정하는 것 외, 지방도매시장의 개설 및 지방도매시장에서의 업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한다.

제69조(농림수산대신에의 보고 등) 농림수산대신은 도도부현 지사에 대하여 지방도매시장에 관한 필요한 보고 혹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지방도매시장 행정에 관한 필요한 조언 혹은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장 도도부현도매시장심의회

제70조 삭제

제71조(도도부현도매시장심의회) ① 도도부현은 도도부현 지사의 자문에 응하여 도도부현 도매시장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그 외 도매시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도도부현도매시장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에 규정하는 것 외, 도도부현도매시장심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잡칙

제72조(지원) ① 국가는 제8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공공단체나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고 있는 지방공공단체가 중앙도매시장정비계획에 근거한 중앙도매시장의 시설의 개량, 조성 또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당

해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시설 중 건물, 기계 설비 등의 중요한 시설의 개량, 조성 또는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10분의 4 이내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도도부현은 중앙도매시장정비계획 또는 도도부현 도매시장정비 계획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언, 지도, 자금의 융통의 알선 그 외의 원조를 하도록 노력한다.

제73조 삭제

제74조(조례와 관계) 이 법률의 규정은 지방공공단체가 도매시장인 중앙도매시장 및 지방도매시장 이외의 것의 개설 또는 당해 도매시장에서의 업무에 관한 조례로 필요한 규제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제75조(허가 또는 인가의 제한 또는 조건) ①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에는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전항의 제한 또는 조건은 허가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의 확실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고,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76조(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등) 이 법률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법률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의 권한은 농림수산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농정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별칙

제77조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다.

1.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도매시장에서 도매의 업무를 행한 자
2. 허위 그 외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제1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4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여진 제15조 제1항의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에 위반한 자

제78조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다.

1.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2. 허위 그 외 부정한 수단에 의한 제13조의 5 제1항 또는 제55조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방도매시장에서 도매의 업무를 행한 자
4. 허위 그 외 부정한 수단에 의한 제58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
5.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여진 제13조의 5 제1항, 제55조 또는 제58조 제1항의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에 위반한 자

제79조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자

3.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자
5.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49조 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80조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 제2항 또는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6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방도매시장을 폐지한 자

제81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에서 전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행위자를 벌하고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 각 본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2조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서 동항의 사본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을 거부한 자
2.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3조 제3조 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